



NICE 국제상품분류 11판 Class Heading 해설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 허 청
상표심사정책과

본 자료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어 원문을 심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NICE)협정 회원국(우리청 포함)의 공식적인 상품분류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 분류표	1	
1류	공업용, 과학용 및 농업용 화학품	3
2류	페인트, 착색제, 부식방지제, 목재보존제	5
3류	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製劑]	7
4류	공업용 오일, 연료, 발광체	9
5류	약제	11
6류	금속제품, 금속제, 건축재료	14
7류	기계, 기계공구, 모터 및 엔진	17
8류	수동식 기기	20
9류	전기기기, 과학기기	23
10류	의료기기	26
11류	환경제어장치	29
12류	수송기계기구	32
13류	화기(火器) 및 화공품(火工品)	34
14류	귀금속 제품, 보석류[장신구], 시계류	35
15류	악기	38
16류	종이제품, 인쇄물, 문방구	39
17류	고무제품, 반가공 플라스틱, 절연, 단열 방음용 재료	42
18류	가죽제품, 마구[馬具]	45
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47
20류	가구, 플라스틱 제품	49
21류	가정용 및 주방용 기구, 화장용구, 유리 및 도자기제품	52
22류	로프, 끈, 직물용 미가공 섬유	56

23류	직물용 실(絲)	59
24류	직물, 가정용 직물제 커버	60
25류	의류, 신발, 모자	62
26류	의류 및 헤어 장식품	63
27류	완공된 마루 및 벽 등에 붙이는 비품	65
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운동용품	66
29류	육류, 가공식품	68
30류	곡물, 커피, 차, 코코아	71
31류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육산물(陸産物),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료	74
32류	비알코올성 음료, 맥주	77
33류	알코올 음료	79
34류	담배, 흡연용품, 성냥	80
35류	광고, 기업관리업	81
36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85
37류	건설업, 수선업	87
38류	통신업	89
39류	운송[사람, 동물, 물품] 서비스업, 물품 보관서비스업	90
40류	재료처리업[주문자 제조방식의 서비스 포함]	92
41류	교육업, 연예오락업	94
42류	컴퓨터, 과학기술 서비스업	96
43류	음식료품 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	98
44류	의료, 미용, 농업	100
45류	개인 또는 법무 서비스업	102
영문	NICE 국제상품분류 11판 Class Heading 세부설명	105

상품 · 서비스업 분류 [니스 11판 기준, 2017. 1월 ~ 2021. 12월]

류	류 제 목
상 품 [34]	1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절제(調質劑) 및 땀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2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3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제;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4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흡수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5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양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6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7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8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9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멍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된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 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자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10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생활동용 기기 및 용품
	11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12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13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4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15 약기
	16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17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18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19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20 기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蠟燭);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21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22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롤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23 직물용 실(絲)
	24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25 의류, 신발, 모자
	26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27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28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29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일;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30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31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32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33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34 담배; 흡연용구; 성냥
서 비 스 업 [11]	35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6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37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38 통신업
	39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40 재료처리업
	41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2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43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44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45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1류

공업용, 과학용 및 농업용 화학품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땀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manures; fire extinguishing compositions; tempering and soldering preparations; chemical substances for preserving foodstuffs; tanning substances; adhesives used in industry)

□ 세부설명

- 주로 공업이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는 1류에 속하나, 특정한 용도가 표시되는 경우 다른 상품류로 분류될 수 있음.
예) 공업용 과산화수소는 제1류로 분류되나, 화장용 과산화수소는 제3류로, 의료용 과산화수소는 제5류로 분류됨.
- 제1류에 속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공업, 과학,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화학품과 다른 류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됨. 이 경우의 “화학품”이라 함은 인공제 및 천연제를 모두 가리킴. 이것은 제1류에 인공수지와 같은 합성제품과 미가공염, 단백질, 알부민, 락토오스와 같은 천연 제품이 포함된 것을 규정함.
그러나, 미가공 상태의 특정 천연물질은 그 상품들의 기능 때문에 또는 타류에 속하는 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1류에 속하지 않음. 이러한 예로는 2류의 천연수지, 4류의 왁스와 석유, 17류의 고무, 19류의 미가공 백악(白堊)이 있음.
- 이 류에 있는 많은 상품들은 타류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됨. 예를 들어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의 미가공 인공수지의 경우 제1류로 분류됨. 반면 미가공 인공수지가 반가공 제품(예를 들어 시트(sheet)나 막대(rod)형태)으로 생산되었을 때 이러한 상품들은 제1류가 아닌 제17류로 분류됨. 더욱이 제조업체는 이러한 반가공의 제품을 20류와 같은 他 류의 완성품으로 제조함.

- 비료와 식물성장을 촉진하는 다른 상품들도 제1류에 포함됨. 반면, 농약, 살균제, 제초제가 궁극적으로는 식물성장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기능이 식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퇴비
- 식품 이외의 것의 보존용 소금
- 식품 산업용으로 쓰이는 특정 첨가제(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천연수지(제2류)
- 의약품 화학품(제5류)
- 살균제, 제초제 및 유해동물 박멸제(제5류)
-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제16류)
- 식품보존용 소금(제30류)
- 식물 보존용 짚(제31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101	비료, 식물재배용 흙	G020102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G100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G1002	공업용 접착제
G1003	인공감미료	G1006	비(非)의료용 미생물
G1007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G1503	도자기용 유약
G1601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G1817	새잡이 끈끈이
G210101	화학시험지	G240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G2403	펄프	G3202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G3404 (구)G3404B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G4003 (구)G4003B	유압오일
G4006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G5301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2류

페인트, 착색제, 부식방지제, 목재보존제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Paints, varnishes, lacquers; preservatives against rust and against deterioration of wood; colorants; mordants; raw natural resins;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printing and art)

□ 세부설명

- 제2류는 기본적으로 장식적 목적이거나 보호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페인트, 니스, 래커와 코팅(표면을 입히는 것)에 사용되는 다른 조제품을 포함함. 코팅(표면을 입히는 것)에 사용되는 제품이 제2류 이외에 분류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데, 이러한 예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군은 도로를 건설하거나 코팅하는 재료, 지붕용 역청도장재료, 내화시멘트 도장재료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명칭 “코팅재[건축재]” 와 같은 19류의 건축재임. 이러한 상품들이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들의 주된 용도가 건축이기 때문에 제19류에 속함. 제2류에 있는 보호목적의 코팅(coating)은 보통 나무에 사용되거나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인트나 기름(oil)형태임. 그러나, 석(벽돌)제품이나 가죽제품 보존용 오일의 경우에는 공업용 오일과 함께 제4류로 분류되어야 하고 식품보존용 오일은 제1류로 분류됨.
- 미가공 천연수지는 제2류로 분류되는 반면, 미가공 인공수지는 제1류로, 반가공 인공수지는 제17류로 분류되어야 함. 미가공 천연수지가 제2류인 것은 그것이 제2류에 속해 있는 초벌도료, 호도료, 페인트, 래커, 니스에 사용되기 때문임.
- 매염제(Mordants)¹⁾는 성질에 따라 제1류 또는 제2류에 속할 수 있음.

1) Mordant (매염제) ① 세포의 착색을 돕는 물질. ② 모발에 색을 고정시키기 위해 더하거나 함께 사용되어지는 화학약품(제품).

1류의 매염제는 주로 식각(蝕刻, etching)으로 사용되는 부식성 화학제(보통의 산류(酸類))인 반면에, 제2류의 매염제는 주로 염료용 표면을 준비하는 데에 쓰임. 미가공 천연수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염제의 기능 및 제2류의 다른 제품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매염제는 제1류보다는 제2류에 속하게 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공업용/수공업용 및 미술용 페인트, 니스 및 래커
- 의류용 염료
- 식품용 및 음료용 착색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인조수지(제1류)
- 세탁용 청분(제3류)
- 화장품용 염료(제3류)
- 그림물감 통(학교에서 사용되는 용구)(제16류)
- 절연용 페인트 및 절연용 니스(제17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001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G1201 S120907 S128302 (구)G1201B	문신잉크
G1501	염료	G1502	안료
G1504	페인트(도료)	G210101	부활절계란 착색용지
G2201	인쇄잉크	G2202	그림물감
G4003 (구)G4003B	방청유		

3류

세정제 및 화장품 제제[製劑]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Bleaching preparations and other substances for laundry use; cleaning,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non-medicated soaps; perfumery, essential oils, non-medicated cosmetics, non-medicated hair lotions; non-medicated dentifrices)

□ 세부설명

- 제5류에 속하는 의약용을 제외한 화장품, 위생용 및 일반적인 세정제는 제3류에 해당함.
- 타류에 속하는 많은 조제용 물질(preparation)들은 화장품, 세정용 또는 세탁용일 경우 제3류로 분류됨.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공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제1류로 분류되나, 세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3류로 분류됨. 로션은 약품목적인 경우에는 제5류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3류로 분류됨. 그러나, 에센셜 오일 및 향수의 경우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항상 제3류로 분류됨.
- 개인 위생용 제품은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제3류 또는 제5류로 분류됨. 그러므로 일반적인 용도의 비누와 샴푸는 제3류에 해당하지만 의료용 비누와 샴푸는 제5류에 해당함. 이는 동물용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지므로 동물용 샴푸는 제3류이나, 동물용 약제처리 및 살충 샴푸는 제5류임.
- 제3류는 대부분 조제용 물질(preparation)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3류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마지, 살균성 명반석, 연마용 경석 또는 화장품 로션 함유 천 및 세정제 함유 걸레와 같이 제3류의 조제용 물질이 스며들어 있는 유형재 상품도 포함됨. 면봉은 용도에 따라 화장품인 경우는 제3류, 의료용인 경우는 5류임.
- 일반적으로 제3류에 속하는 상품들은 기구(apparatus)를 포함하지 않

음. 전기칫솔 또는 빗, 청소용 걸레와 같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미용과 청결도구들은 보통 제21류에 속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
- 실내방향제
- 화장품용 위생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굴뚝청소제(화학제)(제1류)
- 제조공정용 탈지제(제1류)
-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제5류)
- 의료용 샴푸, 의료용 비누, 의료용 헤어로션 및 의료용 치약(제5류)
- 수공구인 회전숫돌 및 연마기구(제8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404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G1001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G1002	세탁용 풀	G1201 S120907 S128302 (구)G1201B	화장품
G1202	향료	G120401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G120402	가발 고정용 접착제	G1301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G1301 G1201 (구)G1301B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G1302	치약
G1505	구두약	G1506	광택제
G1817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G2102	물티슈, 물수건
G3105	연마재		

4류 **공업용 오일, 연료, 발광체**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Grease);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Industrial oils and greases; lubricant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fuels (including motor spirit) and illuminants;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 세부설명

- 제4류에는 공업용 오일, 그리스, 윤활유, 그리고 연료와 발광체를 주로 포함함. 그러나, 제4류의 연료와 발광체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 그리고 램프는 제4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조명용 램프의 경우, 전기에 의하여 작동하거나, 제4류의 연료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11류에 해당함.
- 양초와 조명용 심지는 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4류로 분류됨. 이는 다른 조명용품들이 제11류로 분류되고, 향수(scents and perfumes)가 제3류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게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양초는 조명용 기구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며, 그들은 발광체로 고려됨. (사실상, 양초는 작동하게 하는 발광체(즉, 밀랍)로 구성되어 있음)
- 제4류에 포함되는 연료 가운데는 화학용도일 때는 제1류로, 연료로 사용될 때는 제4류로 분류될 수 있는 탄화수소도 있음. 그 예로 벤젠(benzene)은 1류, 벤젠연료(Benzene fuel)는 4류임.
- 제4류는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그리고 먼지흡착제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예를 들어 먼지가 계속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 또는 건물을 청소하는데 사용됨. 이들은 또한 화학 유출물을 흡수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사용됨.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등이 제4류에 포함된 것은 오일이나 그리스 기반의 상품이기 때문임.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특수 유(油) 및 그리스(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705	공업용 유지(油脂)	G1001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G1505	구두용 그리스	G1506	가죽보존용 오일
G2901	램프용 심지	G3903	전기에너지
G4001	고체연료	G4002	기체연료
G4002 G4003 (구)G4002B	액체연료	G4003 (구)G4003B	공업용 오일
G400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G4201	화구(火口)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영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레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驅除劑); 살균제, 제초제

(Pharmaceuticals, medical and veterinary preparations;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food and substances adapted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food for babies;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s and animals; plasters, materials for dressings; material for stopping teeth, dental wax; disinfectant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vermin; fungicides, herbicides)

□ 세부설명

- 제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제약용, 의료용, 수의과용 조제용 물질(preparation)임. 그 외의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및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있는 물품들은 이러한 원칙에 기인하여 제5류로 분류됨.
- 제5류의 대부분이 조제용 물질(preparation)이지만, 일부는 붕대(bandages for dressing)와 반창고(adhesive plasters)와 같은 유형제 상품(consumer articles)이 포함됨. 제5류에 속하는 밴드(bandages)는 붕대(dressing)가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사용되는 것임. 근육 또는 신체의 다른 일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정형외과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10류에 해당함.
-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는 의료용이던지 수의과용이던지와 상관없이 제5류로 분류됨. 이들은 캡슐, 알약, 정제, 가루 또는 액체의 형태로, 단백질, 비타민, 미량 영양소, 허브, 식이섬유질, 글루코즈, 효소와 같이 영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이들은 일상 식사를 보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그러나, 식이보충제(예: 저열량, 저염분, 저당분, 저지방 등)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 및 음료(예: 시리얼바, 차, 비스킷, 청량음료) 뿐만 아니라 동물용 식품은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이라는 목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제5류로 분류됨. 만일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특정되지 아니한다면, 음식 또는 음료가 있는 상품류로 분류되어야 하며, 합당한 상품류(제29류,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2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특정이 되어야 함.
-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상의 “의료용 위생제”는 제3류의 세면용품과 제5류의 의료용 약제 및 제제간의 차이점에 중점을 둠. 제3류의 위생제(sanitary preparations)는 화장비누, 비의료용 샴푸, 인체용 방취제와 같이 개인적인 세정이나 머리손질을 하는데 사용됨. 제5류의 의료용 위생제(sanitary preparations)는 세정이나 머리손질을 하는 차원을 넘어, 제5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제제일 수 있음. 따라서 제5류의 상품은 소독용 비누, 의료용 비누, 의료용 샴푸, 이박멸용 샴푸를 포함함. 또한 붙어에서 “위생제품”은 생리대와 같은 여성의 생리제품까지 포함함.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및 주석(Explanatory note)상의 이 부분을 근거로 보았을 때 실금환자용 흡수팬티 및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 또한 제5류에 속함.
- 소독제, 유해동물 구제제, 살균제 및 제초제 또한 제5류에 속하는데, 이는 유해한 미생물, 동물, 초목을 파괴하여, 인간, 동물 또는 작물의 질병을 막거나 인간, 동물 또는 작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때문임.
- 혈액, 리빙 티슈, 생물학적 조직배양균은 약제용,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제5류로, 공업용 또는 과학용인 경우에는 제1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화장품류를 제외한 개인용 위생제
- 유아용 및 요실금용 기저귀
-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

- 의료용 샴푸, 비누, 로션 및 치약
- 일반적인 식이요법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보충제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쓰이는 식사대용 식품, 식이요법용 식품 및 음료
-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담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의료용 화장용 위생제(제3류)
-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제3류)
- 지지용 붕대(제10류)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이 아닌 식사대용식품, 식이요법용 식품(제29, 30, 31, 32 또는 33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213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G0302	약제용 유당(乳糖)
G0704	영아용 분유	G1004	약제, 의료용 줄기세포
G1005	섬유용 탈취제, 비인체용 방취제	G1006	의료용 미생물
G110101	응급의료상자	G110301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G110302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료	G110303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G1812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G210101	방충지

6류

금속제품, 금속제, 건축재료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ores; metal materials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able buildings of metal;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metal containers for storage or transport; safes.)

□ 세부설명

- 제6류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재료, 즉 일반금속과 그 합금, 그리고 광석을 포함하는 상품류 중에 하나임. 제6류는 또한 재료 구성에 따라 분류되는 완성품을 포함함. Nice 분류에서,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품들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재료나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됨. 그리고 만일 일반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제6류로 분류됨. 대표적인 예가 소입상인데, 소입상의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해 보아도 어느 류의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또는 주석(Explanatory not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입상은 재료에 따라 분류됨. 예를 들어 금속제 소입상은 제6류, 귀금속제 소입상은 제14류, 종이제 소입상은 제16류, 그리고 대리석제인 경우에는 제19류임.
- 일반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재료 구성과 상관없이 다른 적절한 류로 분류될 수 있다면 6류로 분류해서는 안됨("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일반금속으로 만들어지 특정상품은 제외한다는 제6류의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서 주석 참고). 예를 들어, 기계류, 모터, 그리고 엔진은 주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6류로 분류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이는 이러한 상품들에 제7류가 더 적합한 상품류이기 때문임. 제6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제6류로, 금속이 아닌 재질로 만들어진 동일한 상품을 다른 류로 분류할 때 결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금속제 건축재료와 금속제 소형제품은 제6류로 분류되는 반면, 비금속제 건축재료는 제19류로, 그리고 비

금속제 소형 제품은 제20류로 분류됨.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금속제와 비금속제가 혼재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주된 재료에 따라 분류됨.

- 제6류의 상품들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속제 상품들이고 일반적으로 금속조각들임. 제7류의 기계류나 제8류의 수공구처럼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상품은 금속재질과 상관없이 타 류에 속함.
-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 또한 제6류임. 수영장, 스케이트 링크와 같은 시설은 기능에 의한다기보다는 재료 구성물에 따라 제6류에 포함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신규 가공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예: 3D 프린터용)
- 금속제 건축재료(예: 철도선로용 금속재료, 금속관)
- 금속제 소형 제품(예: 볼트, 나사, 못, 가구용 바퀴, 창문잠금쇠)
-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예: 조립식 주택, 수영장, 야생동물우리, 스케이트장)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예: 모든 용도의 일반금속제 상자, 일반금속제 상(像), 흉상 및 조각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또는 화학적 성질 관련 과학연구용 화학제로 사용되는 금속 및 광석(예: 보크사이트, 수은, 안티몬,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제1류))
-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예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제2류)
- 전기케이블(제9류) 및 비전기용 금속제 케이블 및 로프(제22류)
- 위생설비의 부품인 파이프(제11류), 비금속제 신축파이프, 튜브 및 호스(제17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제19류)
-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예: 수동식 수공구(제8류)종이클립(제16류), 가구(제20류), 주방용품(제21류), 가정용 용기(제21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601	금속광석	G1801	금속제 냄비고리
G1803	금속제 바구니	G1808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G1809	금속제 깃대	G1810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G1814	금속제 야생동물용 멧	G1815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G1817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G1819	금속제 사다리
G1825	금속제 육조가로대	G2501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G2502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G2503	금속제 상자(박스)
G250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봉인재료	G2601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G2602	구두휴탈이용 금속제 매트	G2605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G2607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G270101	금속제 신발은못
G2704	지팡이용 금속제 테	G2801	난로용 장작받침쇠
G3001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쇄기	G3002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G3103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G3106	금속제 줄밥
G32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G3202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G3203	땀납, 용접용 금속봉	G3303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G3304	금속제 타일	G3305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G330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G3608	금속제 교통표지(기계식과 발광식은 제외)
G370101	와이어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G370102	하역용 금속제 팻릿
G3702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G3801	금속제 주물금형
G3809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G3821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G3828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G4202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금속제 다이빙 보드	G430302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eisen)
G4305	박차	G4509 G4401 G4510 구)G4509A	금속제 버클
G5001	금속제 로프	G5002	금속제 망(網)
G5203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7류

기계, 기계공구, 모터 및 엔진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비수동식 농기구;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Machines and machine tools; motors and engines (except for land vehicles);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except for land vehicles); agricultural implements other than hand-operated; incubators for eggs; automatic vending machines)

□ 세부설명

- 7류는 주로 동력식 기계 및 공작기계, 그러한 기계의 부품, 모터 및 엔진, 모터 및 엔진의 부품을 포함함. 7류의 상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8류 및 12류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공구의 분류는 그것의 작동방식에 따름. 원칙적으로, 제7류에는 주로 전동식 공구가 속하고 반면에 8류에는 수동식 수공구가 속함. 예를 들어, 전기해머는 7류, 해머(수공구)는 8류에 해당함. 그러나 털뽑는 기구, 손톱깎이 및 면도기 등과 같이 전기식임에도 불구하고 8류로 분류되는 수공구(hand tools) 또는 수동기구(hand implement)도 있음. 그러한 공구들은 기계 또는 공작기계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7류에 해당하지 않음. 7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공작기계는 보통 청소, 절단, 조성(shaping), 용접, 드릴링, 압축, 조립 및 하역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 동력을 이용하는 공업용 또는 가정용 기계를 말함.
- 기계부품 또한 제7류에 해당함. 타류에 속하는 상품, 예를 들어 제8류의 해머와 제21류의 브러시(brushes) 등의 경우도 “기계부품”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7류에 해당함.
- 기계용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모터 및 엔진은 제7류에 해당함. 단, 육상차량용 모터는 12류에 해당함. 육상차량용 모터의 부품을 포함한 모

든 종류의 모터 부품은 7류에 해당함. 육상차량용 모터가 일반적으로 차량제조업자에 의해 조립되기 때문에 육상차량이 속하는 제12류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모터를 구성하는 부품은 모터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각 다른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되므로 육상차량용 모터의 구성부품은 12류로 분류될 필요가 없음.

- 기계 커플링(machine coupling) 및 트랜스 미션 부품(transmission components)은 모터 및 엔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류로 분류됨. 단, 육상차량용 커플링 및 트랜스 미션 부품은 12류에 해당함.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모터 및 엔진의 부품(모든 종류)
- 전기청소기계 및 장치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정 특수 기계 및 기계공구(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수동식 수공구 및 기기(제8류)
- 육상차량용 모터 및 엔진(제12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816	수족관용 공기펌프	G3104	전동브러시(기계부품용)
G3601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G3602	자동판매기
G3603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기기	G3612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G3613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G370101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조작장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G3702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G3705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G3801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용접기계, 전기용접기계	G3802	광산기계
G3803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G380401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G3806	착유(搾乳)기기	G3808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G3809	어업용 기계	G381001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
G381002	폐기물처리기계	G3811	섬유기계
G3812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G3813	제재기계, 목공기계
G3814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G3815	인쇄기계, 제본기계
G3817	봉제기계	G3818	가죽가공기계
G3819	담배가공기계	G3820	유리가공기계
G3821	도장(塗裝)기계	G3822	포장(包裝)기계,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 봉합 장치
G3823	동력기계(육상차량용 제외)	G3824	펌프, 압축기, 송풍기
G382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G3826 G3711 (구)G3826B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7 G3712 (구)G3827B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8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G3829	수차(水車), 풍차	G3830	세척기계
G3831	주차기계	G3832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G3833	3D 프린터	G390101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G390601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G390801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G3909	용접기계용 전극	G4602	양잠기계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Hand tools and implements (hand-operated); cutlery; side arms; razors)

□ 세부설명

- 제8류의 주석에 따르면, 제8류는 주로 각각의 직업에서 공구로 사용되는 수동기구(hand-operated implements)가 포함됨.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멍을 뚫고, 다듬고, 자르고, 박는 작업을 수행하는 많은 도구들이 제8류에 해당됨. 다수의 공구들은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에는 '수공구(hand tools)'로 기술되어 있지만 제8류의 분류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손에 들고 쓸 수(hand-held) 있어서라기 보다는 작동방식 즉, 전기 또는 여타 다른 동력원이 아닌 사람 손으로 작동하기 때문임. 따라서, 망치 같은 수동식 도구(hand-operated tool)는 8류이고 전기식 및 공압 해머는 역시 손에 들고 쓸 수 있지만 제7류에 해당함.
- 특정 수공구들은 그것들이 전기식인지 또는 비전기식인지는 상관없이, 제8류로 분류된다는 것에 주의해야함. 털뽑기 도구, 면도기, 이발기 그리고 매니큐어 세트 같은 작은 수동 도구들은 제7류의 '기계(machine)' 또는 '공작기계(machine tool)'로 볼 수 없음.
- 수동식 수공구용 손잡이 또한 해당 공구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8류로 분류됨. 낫자루와 칼자루는 제8류에 속하지만 빗자루 손잡이가 빗자루와 함께 제21류에 속하는 것과 같이 해당 물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손잡이는 해당 물건의 속하는 상품류로 분류됨.
- 제8류와 제21류의 관계는 다소 문제가 있음. 특정 상품을 제8류의 수공구로, 또는 제21류의 주방, 가정용품으로 봐야하는지 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 식탁용 날붙이류(table cutlery) 및 나이프는 제8류인 반면, 코르크마

개따개, 호두까기용 기구, 파이용 국자, 각설탕집계와 같은 서빙용품, 주방기구는 제21류임. 주방에서 쓰이는 다른 도구들, 비전기식 치즈 슬라이서, 비전기식 피자용 칼, 비전기식 깡통따개, 채소용 칼은 자르는 속성(cutting nature) 때문에 제8류에 속함.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유사한 상품, 예를 들어 전기 칼, 전기식 깡통따개 등은 제7류에 속함.

-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의 용어 '칼붙이(cutlery)'는 8류에 해당하는 칼, 도검, 가위 같은 수동식 절삭공구(cutting tools) 및 날이 있는 무기류의 범위를 정의해 놓았음. 그러나, 특정용도에 전문화된 절삭 공구들은 다른 류에도 분류되어 있음. 예를 들면 10류의 외과용 메스, 그리고 28류의 펜싱칼이 있음.
- 분류에서 '칼붙이'라는 용어는 또한 칼, 포크 그리고 식사용 숟가락을 지칭함 (이 용어는 프랑스어로 "칼붙이 제품(coutellerie)", "수저와 포크 세트(fourchettes et cuillers)" 로 번역되었음, 왜냐하면 "칼붙이 제품(coutellerie)"은 단지 칼 그리고 기타 절삭기구들을 의미하기 때문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귀금속제 칼붙이류
- 전기식 면도기 및 깎이(수동기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정 특수 도구(구체적인 상품명칭 참조)
- 모터로 작동되는 기계공구 및 도구(제7류)
- 외과수술용 칼붙이(제10류)
- 휴대용 화기(제13류)
- 페이퍼 나이프(제16류)
- 펜싱용 무기류(제28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20401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G1803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G1811	부삽, 부젓가락	G1824	다리미, 비전기식 인두
G2202	팔레트 나이프	G310101	도끼, 송곳, 작살
G310102	단검, 도검, 총검	G3103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G3105	숫돌, 연마용 강철	G3106	끌, 대패, 톱
G3107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G3601	동전삽
G3605	경찰봉	G380402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
G381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G3824	수동식 펌프
G390602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G430301	스키용 스크레이퍼
G430302	등산용 피켈(얼음도끼)(Mountaineering pickels (ice axes))	G430304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매체, 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Scientific, nautical,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ling, checking (supervision), life-saving and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ducting, switching, transforming, accumulating, regulating or controlling electricity;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recording discs; compact discs, DVDs and other digital recording media;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cash registers, calculating machines, data processing equipment, computers; computer software; fire-extinguishing apparatus)

□ 세부설명

- 제9류는 종종 전자제품의 상품류로 생각되지만, 사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포함하고 있음. 제9류에는 주로 5개의 일반적인 상품영역이 있음; 과학 또는 연구 목적의 기기, 정보기술 및 시청각 장치, 전기의 사용 및 분배를 관리하는 기구, 광학 기기 및 안전(safety) 관련한 기기임. 물론, 이러한 영역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고, 제9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들을 포함하지는 아니함.(제9류는 제1류와 함께 니스분류상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류임)
- 안전을 위한 도구와 보호용 의류가 클래스헤딩(Class Heading)상의 “구명(life saving)기기”에 기초하여 제9류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보호용 의류가 제9류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할 수 있으나, “구명”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구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해 가능함. 이에 따라, 호흡장치(인공호흡장치는 제외), 구명벨트, 구명재킷, 방탄조끼와 같이, 보호용 의류는 제9류로 분류됨. 제9류의 보호용 의류의 예는 사고/방사선 조사 및 화재대비용 피복, 사고/방사선 조사 및 화재용 보호신발, 실험실 전용 피복, 보호헬멧(스포츠용 포함), 스포츠용 마우스 가드 및 헤드가드 등 임. 그러나,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은 스포츠용구로써 제28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러

한 제품이 보통 치명적이거나,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명이나
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구명(life-saving)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 제9류에 있는 몇몇 상품들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10류로 분류되
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레이저, X-선장치, 인공호흡기(respirators), 시험
기기(testing apparatus)가 있음.
- 최종 사용자로의 다운로드 용도의 음악 또는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상품들
은 제9류임. 내려받기 불가능한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제공업은 제41류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실험실용 과학연구 장치 및 도구
- 선박제어용 장치 및 도구(예: 측정용 및 명령 전달용 기기)
- 각도기
- 사무용 편치카드기계
- 기록 매체 및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
어, 즉 자기매체에 기록되거나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다음의 전기적 장치 및 도구
 - (a) 주방용 전동기구(식품용 그라인더 및 믹서, 과일용 압착기, 전기식
커피분쇄기 등) 및 전기식 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특정 다른 장
치 및 도구(모두 제7류)
 - (b) 연료를 펌핑하거나 분배하는 장치(제7류)
 - (c) 전기식 면도기, 전기식 깎이(수공구) 및 전기식 다리미(제8류)
 - (d) 공간 난방용, 액체가열용, 조리용, 환기용 등의 전기기구(제11류)
 - (e) 전기식 칫솔과 전기식 빗(제21류)
- 시계 또는 시계도구 또는 다른 크로노미터단위의 도구(제14류)
- 제어용 시계(제14류)
- 외부 스크린 또는 모니터에 사용 적합한 오락 또는 게임용 장치(제28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10101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G1701	비(非)건축용 가공유리
G2202	주판, 계산자(尺)	G270102	방호용 신발
G3002	전기자물쇠	G3106	목수용 자(尺)
G3401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G3402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G3402 G3404 (구)G3402B	사진기기	G3403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 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자동조절기기
G3405	안경, 콘택트렌즈	G3601	계산기구,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기
G3602	동전자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G3605	구멍장치, 방탄조끼, 안전벨트
G3606	소화(消火)기기, 화재피난장치, 소방용 호스	G3607	경보기
G3608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G360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G3702	구멍보트, 소방정(消防艇)	G3703	인공위성
G3705	소방차	G380403	전기울타리
G3808	검란기	G381001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처리용은 제외), 전해조(電解槽)
G390102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G3902	네온사인
G3903	전지	G3904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G3905 (구)G3905B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G390601	전기식 도어벨
G390701	전기음향영상기기	G390701 G390799	이어폰, 헤드폰
G390702	전기통신기기	G390702 G390799	이어셋, 헤드셋
G390801	실험실용 로봇	G390802	소프트웨어
G390803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G390804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G3909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G4302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G430301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G450403	방호용 장갑
G450502	헬멧	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G4507	방호용 피복	G510101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G510102	메트로놈	G520101	자기식 카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G5204	노광(露光)된 필름
G5206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10류 의료기기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a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the disabled; m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 세부설명

- 제10류는 사람 또는 동물 질환을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과용/의료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포함함. 단어 "장치"(apparatus) 및 "기구"(instrument) 는 10류 상품을 5류의 의료용 및 동물용 “약제”(preparations)와 구별하기 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5류, 제10류 및 제44류는 분류에서 “의료용/수의과용류(classes)” 들임. 첫 번째인 제5류는 약제로, 두 번째 제10류는 의료 및 수의과용 장비 그리고 세 번째 제44류는 의료 및 수의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타류에 분류된 특정 장치 및 기구라도 외과용/의료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된다면 제10류에 해당됨.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바늘은 제26류, 레이저는 제9류 이지만, 의료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기 제품들은 제10류에 해당됨. 의류, 가구, 침구와 같이 장치(apparatus) 또는 기구(instrument)가 아닌 특정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를 들면, 수술실용 의류,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침대, 분만용 매트는 제10류에 해당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의료 또는 수의과용”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10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의료기구를 살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살균기는 11류에 속함. “의료 또는 수의과 목적의” 제품을 분류할 때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를 참고해야 함.

- 제10류는 또한 인공삽입물 및 인공이식물을 포함함. “인공”이라는 용어는 제10류의 이식물의 분류에 있어서 중요함. 왜냐하면 외과수술용 이식물로 사용되는 생체조직은 제5류에 해당하기 때문임.
- 붕대(bandages)는 제10류 및 제5류에 있으며, 차이점은 제10류의 붕대는 지지하기 위한 것임. 즉 다친 근육 또는 몸의 일부를 붙잡는 용도로 사용되어 치료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5류의 붕대(bandages)는 상처를 붕대로 감거나 붕대(dressing)를 고정하는데 사용됨.
- 젖병용 젖꼭지, 밸브, 치아발육기, 유아용 모조젖꼭지, 콘돔, 의료용 장갑과 같이 보통 고무로 만들어진 물품들도 또한 제10류에 포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함. 제28류에 적합한 장난감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 장난감 성격의 물건들 역시 제10류에 포함됨.
- 제10류는 의료 치료용에 필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편, 사람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장치를 포함함. 마사지기, 수유용품이 그 예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구성된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植物), 인조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 수술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기저귀 및 실금환자용 기저귀, 탐폰(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5류) 및 전자담배(제34류)
- 휠체어 및 가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 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G450102	수술복
G450402	의료용 장갑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1류 환경제어장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Apparatus for lighting, heating, steam generating, cooking, refrigerat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ply and sanitary purposes)

□ 세부설명

- 제11류에 포함된 기기는 주위 환경을 변하게 한다는 점에서 환경 제어를 위한 기기인 점에 특징이 있음. 예를 들어 가열, 냉각, 건조, 정제 또는 공기 또는 물을 소독하는 것임. 결과적으로 제11류는 식품의 조리, 가열 및 냉장을 위한 기기 뿐만 아니라 가열, 환기, 공기 조절 또는 정화 기구, 위생설비, 급수 및 수처리 설비, 냉동 및 냉장 설비를 포함함.
- 이것은 다른 류의 전기식 가열장치와 혼동이 있을 수 있음. 제11류의 기기와 달리, 다른 류의 전기식 가열기기는 주요기능인 가열보다 오히려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열을 이용하는 것임. 예를 들어, 전기식 아교접착용 분사기(glue gun, 글루건)는 목적이 (비록 열이 기기를 통해 접착물을 녹이는데 이용되지만) 접착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제7류에 있음. 아교 가열 장치(Glue-heating appliances)는 열을 이용하여 접착제(glue)를 녹이고 점성을 유지하여 분리된 물체의 표면에 사용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11류에 있음
- 제11류의 요리용 기기 및 기구는 기기의 일부에 열원을 가져야 함.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베이커리 오븐, 전기 주전자 그리고 전기압력 밥솥 등이 있음. 열원을 포함하지 않는 요리 기구는 일반적으로 21류에 포함됨. 예를 들어, 요리용 주전자와 냄비, 비전기식 주전자와 비전기식 압력솥 등이 있음.
- 위생설비의 부품인 파이프들은 제11류에 있음. 제6류, 제17류, 제19류에도

파이프들이 있으나, 제11류의 파이프들은 세면대, 샤워실 및 화장실과 같은 설비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의 전문부품으로 사용됨. 이들 설비들로부터 물을 나르는 파이프들은 재료에 따라 분류됨. 금속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들은 제6류로 분류됨.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단단한 파이프들은 제19류에 분류됨. 비금속성 재료로 만들어진 유연한 파이프들은 제17류로 분류됨.

- 제11류는 조명장치 및 앞에 언급된 것의 부속품들을 포함함. 예를 들어, 전기식 램프, 전구 및 램프갓 등이 있음. 제11류에 있는 다른 조명 장치와 램프들은 조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차량 및 실험실의 조명은 각각 제12류와 제9류가 아닌 제11류로 분류됨. 제11류가 아닌 다른 류에 분류된 조명들은 조명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됨. 예를 들어, 의료 목적의 램프는 제10류에 있고 신호 조명과 교통 신호등은 제9류에 있음.
- 마지막으로 전열식 양말과 같은 전열식 피복(heated clothing)은 발열기능 때문에 제11류에 속한다. 담요나 보온용 발싸개가 전열식이 아닌 경우 다른 상품류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의료용이 아닌 전열식 담요나 전열식 보온용 발싸개는 같은 논리로 제11류에 속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에어컨디셔닝 장치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침상온열기, 열탕관 및 난방팬
-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및 전기모포
- 전열식 의류
- 전기식 주전자
- 전기식 조리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10101	의료용 소독기	G110102	치과용 오븐(Dental oven)
G1803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장치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G1805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G1806	싱크대
G1808	발광성 가옥번호판	G1813	포켓 워머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G1821	변기, 비데(Bidet)
G1824	가열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G1825	욕조, 샤워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G2801	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 (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G3001	수도꼭지용 좌금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G3305	이동식 간이화장실
G3401	실험실용 가열기기	G3702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G3703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G3801	히트건	G380401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G381001	증류장치, 정수장치,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G3816	공업용 노(爐)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G3828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9060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G390602	두발 건조기	G410201	가스점화기

12류 수송기계기구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 세부설명

- 제12류는 육상/공중 및 수상을 통한 사람, 동물 및 물건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함. “운송”이라는 용어는 중요한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품의 주된 목적이 운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제공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상품들이 제12류가 아닌 다른 류에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자체추진식 도로청소용 기계와 제설기(snow ploughs)는 제7류로 분류됨. 이러한 상품들은 움직이긴 하나, 그들의 목적은 운송이 아닌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임(즉, 도로를 청소하거나, 눈을 치우는 것). 반대로 자전거는 제28류가 아닌 제12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러한 운송이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운송을 제공하기 때문임.
- 그러나 모든 종류의 수송기계기구의 부품이 제12류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제12류)를 제외하고는 기계 또는 수송기계기구의 엔진 및 모터는 제7류로 분류됨.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의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모터 및 엔진의 부품은 제7류로 분류됨.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육상차량용 모터는 보통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조립되어, 육상차량과 함께 분류되는 것임. 그러나, 모터의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러한 부품이 육상차량용이라고 할지라도 제12류에 분류될 필요가 없음.
- 수송기계기구용 연결장치(coupling) 및 트랜스 미션장치(transmission)의 구성부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 분류됨. 즉 육상차량용은 12류, 기타 용도는 7류로 분류됨.

- 수송기계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2류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상품들이 있음. 이러한 상품들은 주로 수송기계기구의 구조(structure part of the vehicle)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경우임. 따라서,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자물쇠는 재료에 따라 분류되며(6류 또는 20류),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와 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는 9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장치는 11류로 분류됨. 수송기계기구 부품의 분류는 알파벳리스트 (the Alphabetical List) 참고가 필요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수송용 특정 특수차량(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차량의 특정 부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든 종류의 모터 및 엔진용 부품(제7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10101	휠체어	G3605	낙하산
G370101	견인차,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	항공기, 항공기의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짐마차	G370702	유모차
G3708	타이어, 튜브	G3711 (구)G3711B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G3712 (구)G3712B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G380401	농업용 트랙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3류 화기(火器) 및 화공품(火工品)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 세부설명

- 본류에는 주로 화기(火器), 총포탄, 발사체, 폭약 및 화공품이 포함됨. 이 상품들의 부품 및 부속품 또한 13류에 해당됨.
- 본류의 상품들은 방화, 폭발 또는 추진력에 의해 작동됨. 모든 무기가 13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칼과 같은 날이 있는 무기는 8류, 펜싱용 칼과 같은 스포츠용 무기는 28류에 해당됨. 개인방어용 스프레이와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13류 대부분의 무기는 폭발장치임.
- 때때로, 13류에서 “무기(WEAPON)”라는 용어는 13류의 “공기총[무기]”과 28류의 “장난감 공기권총”과 같이 유사한 상품이지만 기능이 달라 다른 류로 분류되는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됨.
- 앞선 문단에서 언급한 예는 매우 명확함. 그러나, 작살총과 같은 경우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음. “작살총[무기]”은 13류에 해당하는 반면에 “작살총[스포츠용품]”은 28류에 해당됨. 무기와 무기가 아닌 것의 차이는 작살총이 서로 다른 류로 분류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임. 반면에 폭약 및 화기(火器)는 군사용 또는 스포츠용 모두 13류에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3705	전차(戰車)	G4201	총(銃), 대포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14류 귀금속 제품, 보석류[장신구], 시계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jewellery,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 세부설명

- 제14류는 재료구성에 상관없이 장신구(jewellery) 및 인조장신구(imitation jewellery) 및 귀석을 포함함.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것은, 브로치 및 핀과 같은 특정용품은 장신구(jewellery)로 보기보다는 재봉사의 용품으로 보아 제26류로 분류됨. 류머티즘방지 팔찌와 같은, 의료 목적으로 간주되는 장신구라면 다른 것으로 가치가 없으며, 그러면 그것은 기능에 기반한 10류에 속함.
- 열쇠고리, 키체인 및 참(Charm, 소형장신구)은 14류에 포함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장신구용이 아닌 참, 열쇠고리 또는 키체인은 26류에 속함. 이것은 장신구 제조용을 제외한, 비즈와 같은 유사 제품용의 경우임. 그러한 상품이 14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장신구의 기능을 가져야 함.
- 목주 및 기타 염주와 같은 종류는 14류내 제품의 다른 범주임. 비록 이러한 제품이 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을 지라도 형태와 구성에서의 소형장신구(jewellery)와의 유사하기 때문에 14류로 분류함
- 일반적으로, 시계, 스톱워치 및 기타 시계용구 역시 제14류에 해당함. 그러나, 시간기록기계의 경우와 같은, 시간의 측정 또는 기록을 위한 정밀 시각측정기는 제9류에 해당함. 스마트시계는 또한 제9류에 포함되며 제9류에 분류됨이 타당한 것은 시간기록 이상의 수많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 14류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재료, 즉 귀금속과 그 합금을 포함하는 상품류 중 하나임. 제14류는 또한 재료구성에 따라 분류되는 완성품을 포함함. Nice 분류에서,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품들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재료나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됨. 그리고 만일 귀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제14류로 분류됨. 대표적인 예가 소입상인데, 소입상의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해 보아도 어떠한 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 분류됨. 예를 들어 금속제 소입상은 제6류, 귀금속제 소입상은 제14류, 종이제 소입상은 제16류, 그리고 대리석제인 경우에는 제19류임.
- “귀금속 또는 그 합금” 이라는 주석은, 귀금속제품은 모두 제14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귀금속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달리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임. 귀금속제 제품이라 할지라도, 재료 구성에 상관없이 다른 적합한 상품류에 분류될 수 있다면 제14류로 분류되어서는 안됨. 예를 들어, 은제 차세트는 은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14류로 분류되어서는 아니되는데, 이는 이러한 상품에 더 적합한 상품류, 즉, 제21류, 가정용 및 주방용 기구 및 용기가 있기 때문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모조보석을 포함한 장신구(예: 모조보석)
-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타이클립
- 열쇠고리, 열쇠체인 및 참
- 참(장신구)
- 보석상자
- 장신구, 시계용 부품(예: 장신구용 줍쇠 및 비즈, 시계무브먼트, 시계바늘, 시계스프링, 시계유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스마트시계(제9류)
-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제26류)
-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비귀금속으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미술품(예: 금속

제 조각품(제6류),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조각품(제20류), 자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귀금속제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제2류), 치과용 금아말감(제5류), 칼붙이(제8류), 전기접점(제9류), 금제 펜촉(제16류), 찻주전자(제21류), 자수용 금색실 및 은색실(제26류), 시가상자박스(제34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601	보석의 원석	G1810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G2601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G2702	구두장신구
G3002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G3501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G4401 (구)G4401B	보석, 인조보석	G4402	귀금속, 모조귀금속
G4509 G4401 G4510 (구)G4509A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소형 장신구(보석)	G4510 (구)G4510B	커프스(Cuffs) 단추
G5203	귀금속제 조각품		

15류 악기

악기

(Musical instruments)

□ 세부설명

- 모든 악기 및 15류에 속하는 그 부품 및 부속품, 예를 들어 뮤직박스²⁾와 같이 음악가에 의해 연주되지 않는 음악 창작용 상품이 해당됨. 그러나 소리에 영향을 주는 음악 증폭기 또는 확성기와 같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제작되는 상품들 및,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와 같은 음악재생용 장치는 9류에 해당됨. 15류의 제품은 현악기용 송진, 악보대, 소리굽쇠 및 지휘봉과 같이 음악 제작에 가깝게 관여하는 상품 또한 포함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기계식 피아노 및 그 부속품
- 뮤직박스
- 전기 및 전자악기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향의 녹음용, 전송용, 증폭용, 재생용 장치 (제9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3610	악기 조율기	G510102	악기, 연주보조용품
-------	--------	---------	------------

2) music box : 뮤직 박스(뚜껑을 열면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는 상자)

16류 종이제품, 인쇄물, 문방구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및 제도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Paper and cardboard; printed matter; bookbinding material; photographs; stationery and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artists' and drawing materials; paintbrushes; instructional and teaching materials; plastic sheets, films and bags for wrapping and packaging; printers' type, printing blocks)

□ 세부설명

- 16류는 주로 종이, 판지, 서적·팜플렛·브로셔와 같은 인쇄물 및 인쇄용/제본용 재료로 구성되고, 필기용지, 봉투, 펜(pens), 잉크, 종이클립, 접착테이프, 수정액 및 스테이플러와 같은 필기구 및 사무용품으로 구성됨.
- 본류는 또한 등사,봉인,주소인쇄,우편물 요금납부인기계, 제본용 기계와 같은 사무용품으로 구성됨. 그러나 복사기, 컴퓨터 및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프린터는 9류에 속하고, 인쇄기(printing presses and printing machines)는 7류에, 복사기용 토너 및 인쇄잉크는 2류에 속하는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함. 3D 프린터 또한 제품 제조용 기계로 간주되므로 7류에 속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 클래스헤딩(Class Heading)에 기재된 “예술가(artists)” 및 “미술재료”라는 용어는 제도용 펜, 캔버스, 회화용 팔레트 및 솔(brushes), 모형제작용 점토와 같은 전통적인(비전자식) 예술매체를 나타냄. 도료(페인트, paint)는 2류에 속하고 조각가용 수공구 예를 들어 주걱(spatulas) 및 조각용 끌(chisels)과 같은 수공구는 8류에 속함.
- 16류에 있는 “교재”(teaching material)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용어는 칠판, 지구의(地球儀), 계산표(caculating tables) 및 현미경 관찰용 생물견본과 같은 상품을 나타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용 기기”(teaching apparatus)가 특히 시청각 교재라면 9류에 속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응급처치용 마네키는 “교육용 장치”로 간주되며 9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 특히 언급할 만한 것임.

- 인쇄된 형태의 서적은 16류에 속하는 것임. 최종 사용자의 전자장치로 다운로드 되도록 한 전자서적 또는 기타 출판물이 9류에 속한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임.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물의 온라인 제공은 41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 간주됨.
- 니스분류에서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됨.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상품은 다른 기준, 즉 그들이 만들어진 재료(상품에 대한 일반개요(General Remark (a) for Goods)참고)등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면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들어진 상품은 16류에 속함. 전형적인 예로 포장용 백(bags for packing) 등이 있음. 이들 상품의 기능 또는 용도는 분류의 클래스헤딩(Class Headings) 또는 주석(註釋)에 의해 분류될 수 없으므로 다른 “재료 분류(materials classes)”상의 재료구성물에 따라 구분되며, 예로 포장용 백(bags), 파우치(pouches) 또는 봉투는 이들이 종이/가죽/직물 중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각각 16류/17류/18류/22류에 속함.
-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예시인 “포장용 백(bags)”과 관련하여, 종이의 대용품으로서 플라스틱 필름/시트/백(bags)/봉투와 같은 플라스틱 포장물 또한 16류에 속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페이퍼나이프 및 종이절단기
- 종이보관용 케이스, 커버 및 장치(예: 서류파일, 머니클립, 수표장홀더, 종이클립, 여권홀더, 스크랩북)
- 특정 사무용 기계(예: 타자기, 복사기, 요금별납 일부인 소인기, 연필깎이)
- 미술용 및 실내외 미술용 회화용품(예: 미술용 수채화접시, 회화용 이젤 및 팔레트, 페인트 롤러 및 쟁반)
- 일회용 종이제품(예: 종이제 턱받이, 손수건 및 테이블린넨)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포장용 종이제 가방, 봉투 및 용기,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小立像)과 같은 종이제 또는 판지제 상(像), 소입상(小立像) 및 조각품, 표구되거나 표구 안된 석판화, 회화 및 수채화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그림물감(제2류)
- 예술가용 수공구(예: 국자, 조각용 끌)(제8류)
- 교육장치(예: 시청각 교육장치, 응급처치용 마네킹(제9류) 및 모형완구(제28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사진인화지(제1류), 연마지(제3류), 종이 블라인드(제20류), 식탁용 종이컵 및 종이접시(제21류), 종이제 침대 린넨(제24류), 종이옷(제25류), 권연말음종이(제34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902	시가용 밴드	G1002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G1401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G1803	은박지, 주방용 호일
G1808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G1809	종이제 기(旗)
G1815	종이제 화분커버	G1817	강아지 훈련용 일회용 대소변 패드
G1821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G1824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G210101	종이, 판지	G2102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G2201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G2202	문방구
G2401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G2501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G2502	종이제 크림용기	G2503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G2504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G2602	종이제 식탁장식품, 실내장식용 종이제 커버
G3104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G3303	문풍지
G3401	교육용 생물체조직	G3601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G3815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G4004	봉랍
G450401	종이제 택배이	G520101	비자기식 신용카드
G520102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G5202	서화(書畵)
G5203	혼응지제 조각품	G5204	인화된 사진, 청사진
G5205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G5206	서적, 정기간행물

17류 고무제품, 반가공 플라스틱, 절연, 단열 방음용 재료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Unprocessed and semi-processed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substitutes for all these materials; plastics and resins in extrud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packing, stopping and insulating materials; flexible pipes, tubes and hoses, not of metal)

□ 세부설명

- 17류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재료, 즉,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 점성고무, 석면 및 운모 뿐만 아니라, 제조용 사출성형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류임. 재료구성물에 따라 분류된 완제품을 포함함. 니스분류에서, 완제품은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제품은 만들어진 제품의 재료(상품을 위한 일반적 표기를 참고) 및 분류에 속하는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 점성고무, 석면 및 운모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기타기준에 따라 분류됨. 예를 들어, 창문고정기(Window stop)는 분류의 class heading에서 언급되는 기능 또는 용도와 일치하지 않음. 그러므로 “재료적 분류”에 일치한 분류는 즉, 금속 또는 고무로 각각 만들어졌다면 6류 및 17류에 속하며, 기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20류에 속함.
- 또한, 절연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타류에 속할 수 있는 제품이 절연기능을 제공하면 17류에 속함. 예를 들어, 절연기능이 있는 도료, 섬유 및 종이는 그러한 제품을 위한 전형적인 류, 즉, 2류, 24류 및 16류보다도, 모두 17류에 속함.
- 마지막으로, 비금속제 신축관(flexible pipes), 튜브 및 호스는 17류에 속하며, 차량용 라디에이터 연결용 호스와 살수용 호수(watering hose)가 있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은 19류에 속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타이어재생용 고무재료
- 오염방지용 부유장벽
- 접착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예: 유리용 방현필름)
- 비직물용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탄성사 및 사(絲)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예: 꽃꽂이용 폼 서포트,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료, 고무제 마개, 고무제 완충기, 포장용 고무제 가방 또는 봉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소방용 호스(제9류)
- 파이프(위생설비의 부품)(제11류), 금속제 경질관(제6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제19류)
- 건축용 단열유리(제19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예: 껌수지(제2류), 치과용 고무(제5류),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제9류), 튜브수리용 점착성 고무편(제12류), 고무지우개(제16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002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전기절연용은 제외)	G16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G1815	꽃꽂이용 폼서포트(반가공품)	G210101	석면지(石綿紙)
G2401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G2402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G2504	포장용 고무제 포대	G2506	고무제 마개, 고무제 봉인재료
G3001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G3303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G3606	석면제 소방용품	G3826 G3711 (구)G3826B	고무제 완충기
G3828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G3909	전기절연재료
G3909 G3905 (구)G3909B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G450403	절연용 장갑
G4705	비직물용 화학섬유	G4706	비직물용 무기섬유
G4801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G4901	석면직물
G4904	석면제 펄트(Felt)	G5001	고무끈, 석면제 끈
G5002	석면제 망	G5203	고무제 소입상

18류 가죽제품, 마구[馬具]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imal skins and hides; luggage and carrying bags; umbrellas and parasols; walking sticks; whips, harness and saddlery; collars, leashes and clothing for animals)

□ 세부설명

- 제18류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재료, 예를 들어 가죽, 가죽 대용품, 그리고 동물가죽을 포함함. 제18류는 또한 재료의 구성에 따라 분류되는 완성품을 포함함. 니스분류에서 완성품은 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됨. 이러한 방식으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들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그러한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따라 분류함.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가죽 또는 모조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18류에 해당함. 예를 들어 가죽제 의류와 신발은 제25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제25류가 재료의 구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의류/신발/모자에 적합한 상품류이기 때문. 반대로 박스나 자루와 같이 물건을 포장(packaging)하기 위한 것들의 적합한 상품류는 없음. 이에 따라,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18류로,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16류, 고무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17류, 그리고 직물로 되어 있으면 제22류로 분류함.
- 가방 또는 여행가방과 같이 개인물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품들은 우산과 지팡이와 같이 재료에 무관하게 제18류로 분류됨.
- 또한 제18류의 많은 상품들이 (18류의) 대표명칭에서 채찍, 마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로 동물들과 관련되어 있음. 마구용 부속품, 동물용 여물주머니, 등자 그리고 동물용 목걸이 대표적으로 제18류에 포함되는 상품들임. 또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제25류가 아닌 제18류로 분류됨. 그러나, 동물과 관련되어 있으나 제18류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개집은 제20류로, 말용 술은 제21류로 분류됨. 동물용 목걸이가 일반적으로 제18류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충구제제를 전달하게끔 특별히 만들어

졌으므로 동물용 구충목걸이는 제5류로 분류하는데 있어 적합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여행가방 및 운반용 가방(예: 슈트케이스, 트렁크, 여행가방, 유아를 업기 위한 멜빵주머니, 학생가방)
- 러기지 태그
- 명함케이스 및 포켓용 소형지갑
-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및 케이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사람용 의류, 신발 및 모자(제25류)
- 보관용 가방 및 케이스(예: 랩톱용 가방(제9류);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및 케이스(제9류), 악기용 케이스(제15류), 골프가방, 스키 및 서프보드용 가방(제28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가죽, 인조가죽 및 동물 가죽으로 된 특정 상품(예: 혁지(제8류), 광택용 가죽(걸레)(제21류), 청소용 새미가죽(제21류), 의복용 혁대(제25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20401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G1808	가죽제 라벨
G1817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G2301	가죽
G2302	인조가죽	G2501	가방, 지갑
G2503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G2504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G2602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커버	G2702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G2703	우산, 양산	G2704	지팡이
G380402	동물용 여물주머니	G382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G4305	마구, 채찍	G4508	어린이 보호용 안전끈
G5001	가죽끈		

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 세부설명

- 19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비금속제 건축재료임. 금속제 건축재료는 6류임. 자전거주차설비에서 완전한 건축물까지, 구조물을 구성하고 주로 금속제가 아닌 것은 19류에 해당함. 또한 다른 류로 달리 분류되지 않을 때 일부 특수화된 건축재료는 19류에 속함. 한 예로 역청피복물(coating)은 피복물(coating)으로서 2류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제로 19류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특수건축제품이기 때문임. 공장에서 완전히 지어지고 현장에 운송된 뒤 설치되는 완성주택은 만약 주로 비금속요소로 구성된 것이라면 19류에 속하고, 주로 금속제로 된 것이라면 6류에 해당함.
-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은 19류에 속함. 6류, 11류, 17류에도 또한 관(管, pipes)이 속함에 주의해야 함. 관(管)이 건축재료로 간주되고 그것이 경질이며 비금속제이면 19류, 금속제(경질 및 신축여부는 무관)이면 6류에 속함. 살수용 호스 또는 수송기계기구 라디에이터용 연결호스와 같은 비금속제 신축관은 17류, 위생설비(싱크대, 샤워기 및 변기와 같은 것)에 직접 부착되거나 이것의 특화된 부품이라면 11류에 해당함.
- 19류에는 석재, 콘크리트 및 대리석과 같은 자재가 포함됨. 또한 재료구성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완제품이 포함됨. NICE분류에서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됨. 이런 방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품은 원재료와 같은 다른 기준으로 분류됨(상품에 대한 일반개요(General Remark (a) for Goods)참고). 따라서 석재, 대리석 또는 다른 19류 재료로 만든 흉상(胸像), 소입상(小立像) 및 다른 미술품은 19류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입체조각품용도의 특정 Nice분류가 없기 때문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001	타르(Tar), 피치(Pitch)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G1701	건축용 유리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 비금속제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G2607	비금속제 묘비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G3809	비금속제 인공어초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류 가구, 플라스틱 제품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Furniture, mirrors, picture frames; containers, not of metal, for storage or transport; unworked or semi-worked bone, horn, whalebone or mother-of-pearl; shells; meerscham; yellow amber)

□ 세부설명

- 통상, 가구는 재료와 무관하게 제20류로 분류됨. 실험실용 특수비품(furniture 제9류)과 치과용 팔걸이 의자(제10류)와 같이 특정용도에 맞게 제조된 가구는 그것의 목적에 따라 분류됨.
- 매트리스 및 베개와 같은 침구(bedding)는 제20류로 분류되지만 침대용 린넨.bed linen)과 깃털이나 솜 등을 넣은 이불(eiderdown), 침낭, 담요는 섬유제품(textile goods)으로써 제24류로 분류됨.
- 주석(the Explanatory Note)에 재료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상품은 재료에 따라 그 상품류로 분류됨. 니스분류 원칙상 완제품은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 재료와 같은 기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고(상품에 대한 일반개요(General Remark (a) for Goods)참고), 재료가 제20류의 주석에 기재된 경우 제20류로 분류함. 소입상(figurines)이나 조각상(statuettes)이 전형적인 예인데 기능과 용도가 주석이나 대표명칭 어디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 6류, 14류, 16류, 19류, 20류, 21류로 분류됨
- 또 제20류는 제6류의 금속제 상품품과 대비되는 비금속류 상품이 속함. 예컨대, 저장용 및 수송용 금속제 컨테이너(metal containers)는 제6류로 분류되는 반면 같은 용도의 비금속제 컨테이너의 경우 제20류로 분류됨. 제21류에도 용기(container)가 있지만 이러한 용기들은 대표명칭(class heading)에 따라 가정용이나 주방용 용기에 한해 재료와 무관하게 용도에 따라 분류됨.

- 플라스틱 제품들이 대체로 제20류로 분류되고 그에 대응하는 금속제 제품은 6류로 분류됨 그러나 커튼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재료에 상관없이 제20류로 분류됨. 또한 실내사용을 위한 창문용 블라인드나 차양뿐만 아니라 대나무제 커튼 또는 장식용 주렴과 같은 비직물제 커튼들은 집이나 방을 꾸미는 비품(furnishings)으로 인정되어 제20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금속제 가구, 캠핑용 비품, 총가(銃架), 신문진열대
- 실내창용 블라인드
- 침구(예: 매트리스, 스프링매트리스, 베개)
- 거울, 가구용 또는 화장용 거울
- 비금속제 등록판
- 비금속제 소형제품(예: 볼트, 나사, 장부축, 가구바퀴, 파이프고정용 비금속제 이음고리)
- 편지함(석제 또는 금속제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실험실용 특수비품(제9류) 또는 의료용 특수비품(제10류)
-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제6류),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제19류), 옥외용 직물제 블라인드(제22류)
- 침대용 린넨제품, 아이더다운 및 침낭(제24류)
- 특정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형태의 거울(예: 광학제품용 거울(제9류), 외과용 또는 치과용 거울(제10류), 백미러(제12류), 총용 조준경(제13류))
-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뽕, 뽕, 상아, 고래수염, 조개껍질,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응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예: 장신구 제조용 비즈(제14류), 목제 바닥판(제19류), 가정용 바구니(제21류), 플라스틱제 컵(제21류), 화문석(제27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401	우산꽃이통	G1601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G1803	비금속제 바구니	G1808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G1809	비금속제 장대	G181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G1815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G1817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G1819	비금속제 사다리	G1824	수틀, 목제 실패
G1825	비금속제 육조가로대	G1901	갈대, 밀짚, 벼짚, 보릿짚
G2001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G2002	고리버들, 등나무 줄기
G2401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G2404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뿔
G2502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G2503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G2504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G2506	비금속제 마개(고무제/자기제/유리제는 제외)
G2601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G2602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련, 비직물제 벽면장식
G2604	액자	G2605	비금속제 바람개비, 옥외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G2606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G2607	관(棺), 봉안단지
G270101	비금속제 신발은못	G2705	부채
G3001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G3002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G3106	나무작업대	G3303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G3304	반사경 타일	G3601	제도대
G3604	이미용 의자	G370101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G370102	하역용 비금속제 펠릿	G3702	비금속제 계선부표
G380402	사료선반	G3807	벌집, 벌통
G3828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G4201	총가
G4301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G430302	비금속제 텐트 팩
G4304	낚시바구니, 낚시 의자	G520101	플라스틱제 비자기식 열쇠카드
G5203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G5205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21류 가정용 및 주방용 기구, 화장용구, 유리 및 도자기제품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 제품 및 토기제품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combs and sponges; brushes, except paintbrushes; brush-making materials; articles for cleaning purposes; unworked or semi-worked glass, except building glass; glassware, porcelain and earthenware)

□ 세부설명

- 제21류의 대표명칭 및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제21류에는 가정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기 및 작은 수동기구를 포함함. 주방기구 및 용기는 넓은 범위의 상품들을 포함하는 데, 몇몇 상품들은 제7류, 제8류 및 제11류의 특정한 상품들과 연관되어 있음.
- 제21류에 속하는 용기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능 또는 용도임. 들통(pails), 쓰레기통(garbage cans), 꽃병, 병(bottles), 실내수족관은 모두 재료와 상관없이 제21류에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이기 때문임. 반면 상품의 운송(transport)과 저장(storage)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재료구성에 따라 금속제인 경우에는 제6류로, 비금속제인 경우에는 제20류로 분류됨. 니스분류의 총칙 (f)에 따라 어떠한 제품을 담기 위하여 그 제품의 모양과 형태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함. 예를 들어 콘택트렌즈를 위한 용기는 콘택트렌즈와 함께 제9류로, 약기케이스는 약기와 함께 15류로 분류됨.
- 접시, 사발(bowl), 음료용 잔, 머그잔(mugs), tea services(한별 찻그릇), 파이서버(pie server)와 같은 식기용 용기 또는 도구는 제21류로 분류됨. 중요한 예외는 제8류로 분류되는 나이프, 포크 및 스푼임. 21류의 각설탕 집게, 서빙용 국자와 같은 서빙용 기구는 21류로 분류되고 수공구로 사용되는 집게(Tongs)와 국자(Ladles)는 8류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할 가

치가 있음.

- 제21류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는 대부분 수동식(비전기식)이고, 동일한 상품이나 전기식인 경우에는 다른 류로 분류함. 예를 들어 청소기기, 광택기기 및 다지거나(mincing), 갈거나(grinding), 압착하거나(pressing), 으깨는(crushing) 주방용 기구는 비전기식인 경우에는 제21류로 분류되고, 전기식인 경우에는 제7류로 분류됨. 그러나, 빗 및 대부분의 솔(미용 목적 및 칫솔)은 전기식인지 비전기식인지에 상관 없이 모두 제21류로 분류됨. 반면에 매니큐어, 페디큐어, 손톱다듬줄, 제모기, 면도기는 전기식인지 비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8류로 분류됨.
- 주전자, 압력솔과 같은 요리도구는 비전기식인 경우에 제21류로 분류됨. 그 자체에 열원이 있는 요리도구(예: 전기식 주전자, 전기압력솔)는 제11류의 전기식 가열 조리기구와 같이 분류됨.
- 제21류는 유리(건축용은 제외 - 건축용 유리의 경우에는 제19류)와 같이 미가공 또는 반가공 재료를 포함하는 상품류 중 하나임. 제21류는 또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을 포함함. 니스 분류기준에 따르면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고 이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준 즉, 제품의 재질에 따라 분류됨. 만약 자기, 세라믹, 도기(earthenware) 또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은 21류로 분류됨. 흉상(busts), 작은 조각상(statuettes), 예술품(works of art)이 대표적인 예시임. 이러한 제품들의 용도·기능이 클래스 헤딩이나 주석(the explanatory note)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의 재질에 따라 분류되고 즉, 각각 대리석, 나무, 세라믹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19류, 20류, 21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주방용 기구 및 용기(예 : 파리채, 빵씨는 도마, 코르크마개따개, 각테일셰이커, 저금통, 들통, 요리용 솔 및 냄비)
-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소형 수동식 주방기구(예: 마늘압착기, 호두까기용 기구, 절구공이 및 절구)
- 서빙용구(예: 각설탕집게, 얼음집게, 파이용 국자, 서빙용 국자)
- 전기식 및 비전기식 빗
- 전기식 및 비전기식 칫솔
- 접시스탠드, 포도주병 스탠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세제(제3류)
-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전동식 소형기구(제7류)
- 수동식 면도기, 이발기구 및 손톱깎이,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전기식 및 비전기식 기구(예: 매니큐어세트, 금강사보드, 손톱밀살깎이(제8류))
- 식탁용 기구(제8류)
- 이제거용 빗, 혀긋는 기구
- 전기식 조리기구(제11류)
- 화장용 거울(제20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유리제, 자기제 및 토기제 상품
(예: 의치용 도자기재(제5류), 안경렌즈(제9류), 절연용 유리솜(제17류), 점토 타일(제19류), 건축용 유리(제19류), 직물용 유리섬유(제22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20401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G1302	칫솔, 치실
G140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G1701	비건축용 유리기초제품
G1801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솔,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G1802	식기
G1803	가정용 식음료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음료용 빨대	G1804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G1808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G1811	석탄통
G1812	파리채, 포충기	G1814	쥐덫
G1815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움(Terrarium), 화분용 물뿌리개	G1816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G1817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G1820	양복솔
G18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G1822	저금통
G1824	다림질대	G1825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G2503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G2506	유리제 마개, 도자기제 마개
G2507	병류(꽃병은 제외)	G2602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G2603	도자기, 꽃병, 수반	G2607	제기(祭器), 향로
G2702	구둣골, 구둣주걱	G2902	춧대
G3104	공업용 솔, 선박용 솔	G3405	안경수건
G380402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G390601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G390602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빗, 전기칫솔,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G430302	코펠
G450403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G4510 (구)4510B	단추고리
G4511	때밀이용 스펀지	G4704	브러시용 모
G4706	비절연용 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G4801	비절연용 유리섬유사,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G5203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G5205	인조알

22류 로프, 끈, 식물용 미가공 섬유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 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식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Ropes and string; nets; tents and tarpaulins; awnings of textile or synthetic materials; sails; sack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materials in bulk; padding, cushioning and stuffing materials, except of paper, cardboard, rubber or plastics; raw fibrous textile materials and substitutes therefor)

□ 세부설명

- 미가공 상태의 직물제 재료들이 제22류로 분류되는데 특히 섬유임.
- 기타 직물류(제23류, 제24류, 제25류)에 분류되지 않는 일부 완성품(텐트, 차양, 돛)이 제22류에 포함됨. 돛(sails)은 타 분류에 속하는 보트와 수상 스키장비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및 스포츠용 장비와 함께 쓰이더라도 제22류에 속함.
- 하역용 비금속제 밧줄, 포장용 또는 결속용 밴드(band), 그리고 천연 또는 인조 섬유,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로프와 줄(string)과 같은 상품이 22류로 분류됨. 그러나 바느질용, 뜨개질용, weaving, 자수용 또는 직물 제조용 실(thread and yarn)은 제23류로 분류됨.
- 그물 (어망, 가축사양용 네트) 또한 22류로 분류됨. 그러나, 안전망(제9류), 운동용 네트(제28류)와 같이 특수한 목적의 그물은 타류에 속할 수 있음. 그물을 분류할 때,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을 참고하여야 함
- 이에 해당하는 기타 완제품에는 대규모의 물건 및 자재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포대(sacks)와 가방, 우편행낭, 포장용 직물제 포대 등이 있음.

- 끝으로 제지(paper)나 판지 재질의 충전재(제16류) 또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재(제17류)를 제외한 충전재(padding, cushioning, stuffing materials)는 제22류에 속함. 짚, 말털(horsehair), 케이폭(kapok), 깃털, 해초와 같은 천연 충전재들이 이에 해당함(고무는 제외).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천연 또는 인조직물용 섬유제,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끈 및 밧줄
- 어망, 해떡, 줄사다리
- 비성형된 수송기계용 덮개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포대(예: 세탁물용 포대, 시체운반용 부대, 우편행낭)
- 직물제 포장용 포대
- 동물성 섬유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예: 동물모, 누에고치, 황마(黃麻), 미가공 또는 가공양모, 생사(生絲))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제 로프(제6류)
- 악기용 현(제15류) 및 스포츠라켓용 현(제28류)
- 종이 또는 판지제 충전재료(16류),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료(17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망 및 포대(예: 안전망(제9류),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제12류), 여행용 옷가방(제18류), 머리망(제26류), 골프용 가방(제28류), 운동용 네트(제28류))
-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포장용 비직물제 포대(예: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제18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802	충전용 해초	G1814	그물형 밧
G1819	줄 사다리	G1901	충전용 짚
G2003	대팻밥, 톱밥	G2504	포장용 식물제 포대
G2505	짚제 포장재, 가마니	G2605	천막(캠핑용은 제외)
G2606	해먹	G2702	구두궤매는 실
G3702	선박용 돛	G3809	어망용 부자
G43030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G4601	누에고치
G4701	미가공 면(綿)섬유	G4702	미가공 견(絹)섬유
G4703	미가공 마(麻)섬유	G4704	미가공 모(毛)섬유
G4705	직물용 화학섬유	G4706	직물용 무기섬유
G5001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G500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23류 식물용 실(絲)

직물용 실(絲)

(Yarns and threads, for textile use)

□ 세부설명

- 대표명칭에 명시된 대로, 천연 또는 합성 실(yarns and threads)은 직물용일 경우 제23류로 분류됨. 면사나 견사, 양모사는 명확하게 제23류로 분류되고 직물용으로 사용되는 섬유유리사(fiberglass), 탄성사(elastic threads), 고무사, 플라스틱사도 제23류로 분류됨.
- 특정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23류가 아닌 다른 류(class)로 분류된 실들이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에 기재되어 있음을 숙지해야 함. 예를 들어, 플라스틱제 봉합사는 제17류로, 전선식별용 섬조는 제9류로 분류됨.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4801	직물용 실(絲), 자수용 금속제실		
-------	--------------------	--	--

24류 직물, 가정용 직물제 커버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Textiles and substitutes for textiles; household linen;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 세부설명

- 전통직물용 섬유를 포함해 직물 또는 플라스틱이나 오일클로스(oilcloth)와 같은 직물대용으로 만들어진 특정완제품들이 제24류로 분류됨. 가령, 손수건, 모기장, 인쇄기용 블랭킷, 수의(shrouds), 장식용 벽걸이(wall hangings) 등이 이에 해당함.
- 의류(제25류) 또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는 직물제 완제품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제24류로 분류되지 않는 직물제품들 가운데는 말용 모포(제18류), 절연용 직물 및 석면직물(제17류), 제분용 직물(제16류) 및 토목 섬유(geotextile, 제19류)가 있음.
- 모든 침대용 린넨 제품.bed linen)의 경우 직물 또는 종이제와 상관없이 제24류로 분류됨. 하지만 식탁보, 냅킨과 같은 테이블제품들은 직물이나 직물대용으로 제조된 경우 24류에 속하지만, 종이제이면 16류에 속함. 마찬가지로 깃발 및 배너가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이면 24류이고 종이제이면 16류에 속함. 침낭 및 침낭라이너도 24류에 속하는 데 그 이유는 이런 제품들은 침대용 린넨제품과 유사하기 때문임. 비록, 유아용 침낭은 유아가 자고 있을 때 유아를 덮기 위한 특화된 제품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 끝으로, 모포와 같은 침대커버는 비전열식일 경우 제24류, 전열식일 경우 제11류, 의료용일 경우 제10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 린넨(예: 침대덮개, 장식용 베갯잇, 직물제 수건)
- 종이제 침대린넨
- 침낭, 침낭 라이너
- 모기장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전기모포(제10류), 비의료용 전기모포(제11류)
- 종이제 테이블린넨(제16류)
- 석면제 방화막(제17류), 대나무제(竹製) 커튼 및 장식용 주렴(珠簾)(제20류)
- 말용 모포(제18류)
- 특수용도의 특정 직물(예: 제본용 직물(제16류), 절연용 직물(제17류), 지반용 직물(제19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20401	화장제거용 천	G1803	행주
G1808	직물제 라벨	G1809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G1821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G1824	자수용 도안직물
G1825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G2302	인조가죽직물(부직포는 제외)
G2602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직물제 커버	G2604	직물제 족자
G2606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	G2607	수의
G430302	침낭	G4511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G4901	직물	G4902	메리야스 원단
G4903	세폭(細幅)직물	G4904	부직포(不織布), 직물펠트

25류 의류, 신발, 모자

의류, 신발, 모자
(Clothing, footwear, headgear)

□ 세부설명

- 의류, 신발 및 모자(스포츠용을 포함) 등이 제25류로 분류됨. 의류, 신발 및 모자가 특정 용도를 위한 상품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분류됨. 예를 들어, 제25류에 없는 방화피복과 기타 방호용 피복은 제9류로, 수술복은 제10류, 스케이트날이 붙은 스케이트화는 제28류로 분류됨.
- 기성복 안감과 같은 의류의 특정 부분은 제25류로 분류되나, 대부분의 고정구(파스너) 및 바느질도구는 제26류로 분류됨. 장부족 및 고정쇠와 같은 신발의 구조부품은 재료에 따라 제6류 또는 제20류에 분류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수 목적의 특정 의류 및 신발(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2501	머니벨트(의류)	G270101	신발
G430301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G430301 G430302	등산복
G430301 G430303	골프복	G430301 G4304	낚시복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G450102	의사용 가운
G4502	한복	G4503	속옷, 스웨터, 셔츠
G450401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G450403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G450501	모자	G450601	방한용 마스크(의류)
G4508	의복용 벨트	G4513	방수용 피복

26류 의류 및 헤어 장식품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Lace and embroidery, ribbons and braid; buttons, hooks and eyes, pins and needles; artificial flowers; hair decorations; false hair)

□ 세부설명

- 의류 장식품(clothing embellishments)은 26류에 속함. 의류용 레이스장식, 주름장식, 스팅글(spangles for clothing)과 같은 장식품은 장식적(decorative)임. 혁대고리, 똑딱단추, 지퍼, 구두버클와 같이 의류 장식품은 기능적(functional)임. 대표명칭(class heading)에 고리(hook), 핀, 바늘을 참고하면 핀꽃이(pin cushion)와 바늘상자와 같은 관련제품뿐만 아니라, 코바늘, 뜨개질용 바늘, 바느질용 바늘도 제26류로 분류가 가능함.
- 천연모발, 가발, 기타 인조모발과 머리망, 머리띠, 헤어컬용 종이(hair curling papers)와 같은 관련제품들도 제26류로 분류됨. 뿐만 아니라 인조수염은 제26류이지만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인조속눈썹은 제3류로 분류됨.
- 대표명칭에 기재된 조화(artificial flowers)를 참고하면 생화의 인공모조품 역시 제26류로 분류되지만, 인조 크리스마스트리는 분류 목적상 오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과 함께 제28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발, 부분가발 및 인조턱수염
- 바레뜨 및 헤어밴드
- 머리망
- 버클 및 지퍼

-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수한 형태의 특정 혹(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특수한 형태의 특정 바늘(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인조 속눈썹(제3류)
- 인조 모발(제10류)
-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 참(제14류)
- 참(장신구)(제14류)
- 직물용 실(絲)(제23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20401	머리염색용 캡, 헤어롤	G120402	가발, 장식용 수염
G1808	경기용 번호표	G1824	바늘꽃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G2602	러그혹	G2702	구두끈, 구두 트리밍
G3002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G3102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G3811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G3817	재봉틀용 바늘
G390602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G390702	휴대폰용 장식고리
G450401	의류용 어깨 패드	G4508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G4509 G4401 G4510 (구)G4509A	머리장식용품, 의류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G4510 (구)G4510B	단추, 지퍼
G4512	조화	G4902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G5205	인조과일		

27류 완공된 마루 및 벽 등에 붙이는 비품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Carpets, rugs, mats and matting, linoleum and other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 wall hangings (non-textile))

□ 세부설명

- 기본적으로 제27류는 바닥깔개와 벽지와 관련한 상품임. 제27류의 대표명칭 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미 구축된 바닥을 덮는데 사용하는 재료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임. 이 문구가 “타일”과 같이 제19류의 바닥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건축재료와 제27류의 상품들을 구별시켜 줌. 이러한 분류의 예외는 거의 없음. 주석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27류의 피복재(coverings)들은 완공된 마루 및 벽에 붙이는 실내 장식용 커튼·깔개류(furnishing)임.
- 분류의 대표명칭은 특별히 “비직물제 벽걸이”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벽지가 일반적으로는 “벽걸이”으로 고려되지는 아니하지만, 제27류에 포함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음. “비직물제 벽걸이”은 또한 벽걸이(벽에 거는 장식품) 또는 태피스트리가 직물제가 아닌 경우에만 제27류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직물제 태피스트리는 제24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목질바닥판(제19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817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G1825	욕실용 매트
G1902	돛자리, 거적, 명석	G210102	벽지
G2602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G2604	비직물제 족자
G3303	인조 잔디	G430301	스포츠용 매트

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운동용품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Games, toys and playthings; video game apparatus;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decorations for christmas trees)

□ 세부설명

- 게임, 장난감(toys), 놀이기구(playthings), 놀이용구(objects of amusement), 스노우글로브(snow globes) 및 색종이 조각(confetti) 같은 오락 용품이 제28류에 속함.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트리용 받침대 역시 제28류로 분류됨. 그러나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한 양초, 전등, 장식용 과자들은 각 제4류, 제11류, 제30류로 분류되며, 천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31류로 분류됨.
- 통합표시스크린이 장착된 또는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를 갖추고 있는 각종 오락과 게임 장치들은 제28류로 분류됨. 모든 비디오 게임 장치는 제28류로 분류되나 게임 소프트웨어는 제9류로 분류됨.
- 체조 및 스포츠용품 상당수가 제28류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스포츠용 보호헬멧과 고글은 제9류로, 체조용 매트는 제27류로, 스포츠용 부츠는 제25류임. 여가활동을 위한 사냥용구와 낚시용구들은 제28류로 분류됨. 그러나 사냥용 소형화기류나, 낚시용 작살은 각각 제13류와 제8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제어기를 포함한 오락 및 게임장치
- 오락 및 파티용품(예: 축제용 마스크, 파티용 종이모자, 색종이조각(놀이용품), 깜짝상자 및 파티장식

- 사냥 및 낚시용구(예: 낚시대, 낚시그물, 인조미끼,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 각종 운동 및 놀이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제4류),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제11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과자 및 초콜릿(제30류)
- 잠수장비(제9류)
- 성 장난감 및 성인용 인형(제10류)
- 체조 및 스포츠 전용의류(제25류)
- 특정 체조 및 스포츠용품(예: 보호헬멧, 스포츠용 고글 및 마우스가드(제9류), 스포츠용 화기(제13류), 체육관용 매트(제27류)) 및 기타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낚시 및 사냥장비(예: 사냥칼, 작살(제8류), 사냥총(제13류), 어망(제22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1812	곤충채집용 채	G1817	애완동물용 장난감
G2602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G3611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G4301	완구, 인형	G4302	오락 및 놀이용구
G430301	스포츠용구(등산용구와 골프용구는 제외)	G430302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장비)
G430303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G4304	낚시용구
G510102	고적대 지휘봉		

29류 육류, 가공식품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Meat, fish, poultry and game; meat extracts; preserved, frozen, dried an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jellies, jams, compotes; eggs; milk and milk products; edible oils and fats)

□ 세부설명

- 제29류와 제30류는 식품(foodstuff)과 관련한 상품류임. 제29류의 식품은 동물 또는 채소에서 유래하여 인간의 소비 또는 저장을 위하여 가공된 것임.
- 신선한(가공하지 아니한) 채소와 과일은 식물이 수확되었거나, 나무로부터 따졌다고 할지라도 제31류로 분류됨. 채소 또는 과일이 섭취나 저장을 위하여 가공되었다고 한다면(예를 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나온(ready-made) 샐러드, 냉동 또는 요리된 푸레(puree), 콤포트(compote), 잼), 이들 상품들은 제29류로 분류됨.
- 우유나 치즈와 같은 낙농 제품은 제 29류로 분류되며, 대용우유(예: 아몬드 우유, 두유)도 여기에 속함.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음료는 제32류로 분류되지만, 제29류의 재료(예: 우유, 땅콩우유)로 만들어진 음료는 제29류로 분류됨.
- 비슷한 음식들이나 음료, 예를 들면 피자와 샌드위치에 속하는 재료가 제 29류에 속하는 성분이 있더라도 이는 제30류로 분류됨. 심지어 치즈, 햄, 참치, 계란 또는 야채와 같이 제29류에 속하는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 30류로 분류됨. 이는 피자 또는 샌드위치의 주된 재료가 제30류에 해당하는 피자도우 또는 빵으로 고려되기 때문임.
- 이러한 원칙하에 제29류의 재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속이 찬)

페이스트리(pastries) 또는 파스타는 제30류로 분류됨. prepared meal과 관련하여, 본 상품은 주된 재료가 무엇이나에 따라 제29류 또는 제30류로 분류됨.

- 요리를 위한 기름과 지방류들은 동물 또는 식물에서 추출되므로 제29류에 속함.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상품이라도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고 청소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산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각각 제3류와 제4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 식용 씨(향신료 또는 향미료인 것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정 식물성 식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영아용 식품(제5류)
- 의료용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 식이보충제(제5류)
- 가공된 씨(향신료)(제30류)
- 샐러드드레싱(제30류)
- 부화용 수정란(제31류)
- 사료(제31류)
- 살아있는 동물(제31류)
- 재배용 곡물종자(제31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20101	냉동한 두류	G020102	식용 가공꽃가루
G0202	냉동한 채소	G0204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G0204 G0290 (구)G0204B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G0206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G0211	냉동한 과일
G0301	크로켓	G0701	식육
G0702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G0703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G0704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G0705	식용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G0707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G0801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G0802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G0803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30류 곡물, 커피, 차, 코코아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 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Coffee, tea, cocoa and artificial coffee; rice; tapioca and sago;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bread, pastries and confectionery; edible ices; sugar, honey, treacle; yeast, baking-powder; salt; mustard; vinegar, sauces (condiments); spices; ice)

□ 세부설명

- 제30류는 인간의 섭취 또는 보존을 위하여 식물로부터 유래한 상품(products)으로 구성됨. 그러나, 제30류는 가공된 채소(제29류)를 포함하지 않음. 가공된 곡물, 쌀, 커피, 차 및 코코아는 제30류로 분류됨.
- 설탕, 꿀, 향료(aromatic substances), 보존된 허브(preserved herbs), 소금과 조미료(condiments)와 같이 음식과 음료의 풍미를 증대시키거나, 단맛이 나게 하는 재료는 제30류에 해당함. 예외적으로 에센셜 오일은 제30류에 해당함.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타 류에 속할 수 있는 상품들도 양념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제30류에 해당됨. (예: 가공된 씨) 씨앗이 양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된다면 제29류에 해당함
- 어떠한 음식과 음료는 주된 재료에 따라 분류됨. 예를 들어 대부분의 비알코올 음료는 제32류로 분류되나, 제30류의 성분으로 주로 구성된 음료는 제30류로 분류됨. 이러한 상품예시로는 커피음료, 차음료, 코코아음료, 초콜릿 음료 등이 있음.
- 곡분(flour)과 같은 곡물제품(cereal grain products)은 빵과 패스트리와 같이 곡분으로 만든 제품과 함께 제30류로 분류됨. 피자과 샌드위치를 만들 때 제29류에 해당하는 치즈, 고기, 생선, 계란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는 30류에 해당됨. 이는 피자 또는 샌드위치의 주된 재료가 제30류에 해당하는 피자도우 또는 빵으로 고려되기 때문임. 또한 이는 핫도그 샌드위치

그리고 가공된 치즈버거 같은 것들도 제30류에 해당된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주된 재료가 분명하게 빵으로 고려되기 때문임.

- 이러한 원칙하에, 제29류의 재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속이 찬) 페이스트리(pastries) 또는 파스타는 제30류로 분류됨. 식사요리(prepared meal)과 관련하여, 본 상품은 주된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29류 또는 제30류로 분류됨.
-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30류에는 양념인 간장과 케첩도 포함됨. 제30류에는 묽은 과일 소스(fruit coulis)나 토마토 소스처럼 양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정 소스가 포함되지만 크랜베리 소스, 젤리, 잼 그리고 과일 설탕은 제29류에 해당됨. 이러한 종류의 상품들은 분류할 때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을 참고하여야 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를 주재료로 한 음료
- 식용 가공곡물(예: 귀리플레이크 및 기타 곡물로 만들어진 가공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정 식물성 식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 식품 이외의 것을 보존하기 위한 소금(제1류)
- 의료용에 적합한 약초,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 영아용 식품(제5류)
- 식이보충제(제5류)
- 약제용 이스트(제5류), 동물용 효모(제31류)
- 미가공 곡물(제31류)
- 사료(제31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20101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G020102	식용 곡분, 식용 전분
G0204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G0206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G0207	누룩, 효모	G0208	식용 맥아
G0301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한과	G0302	식용 당(糖)류
G0303	떡, 인절미	G0401	간장, 고추장, 된장
G0402	화학조미료	G0403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G0404	향신료	G0405	식용 소금
G0501	차(茶)류	G0502	커피, 코코아
G0503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G0505	얼음
G1001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31류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육산물(陸産物),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료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Raw and unprocessed agricultural, aqua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raw and unprocessed grains and seed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fresh herbs; natural plants and flowers; bulbs, seedlings and seeds for planting; live animals; foodstuffs and beverages for animals; malt)

□ 세부설명

-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육산물(land products), 살아 있는 동물, 식물, 사료가 제31류로 분류됨.
- 신선한 과일 및 채소는 땅이나 나무에서 채취한 경우에도 제31류로 분류됨. 채소나 과일이 소비 및 보존을 위해 가공처리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진 샐러드에 넣거나, 냉동 또는 조리과정을 통해 퓨레(purée), 콤포트(compote) 또는 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제29류로 분류됨.
- 미가공 곡물, 종자, 미가공 곡류(raw cereal)는 제31류로 분류됨. 맥아도 31류에 해당하는데 발아상태에서 건조된 곡물이기 때문임. 이 시점에서의 맥아는 기본적인 미가공 곡물재료로 제30류 식품이나 제32류 또는 제33류 음료로도 분류되기 위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았음.
- 미가공 계란 즉, 껍질이 있는 계란은 미가공 축산물로 인정돼 제31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계란은 살아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타 동물성 식품과 더불어 제29류로 분류됨. 제31류 알파벳 리스트(the Alphabetical List)에 기재된 계란은 부화용 수정란, 어류의 알, 누에씨가 유일하며, 수정란이 부화되면 살아 있는 동물이 된다는 판단에 따름.

- 종자, 구근 그리고 묘목은 제31류에 해당됨. 생화(natural flowers), 나무의 몸통(trunks)·원목(unsawn timber)과 같은 임업생산물 또한 제31류로 분류됨. 목재를 가공해 건축용 빔(beams), 건축용 판자, 건축용 판넬과 같은 반가공 목재가 될 경우 제19류로 분류됨.
- 대부분의 동물용 깔개용 제품은 농업 및 임업 생산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물용 깔개용 제품은 31류에 해당함. 동물용 깔개에 간혹 사용되는 짚(straw)은 농업 생산물이므로 제31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미가공 곡물류
- 식물 찌꺼기
- 미가공 해조류
- 제재전(製材前) 목재
- 부화용 수정란
- 신선한 버섯 및 송로버섯
- 동물용 깔짚(예: 애완동물용 모래 종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배양미생물, 의료용 거머리(제5류)
- 동물용 식이보충제 및 의료용 동물사료(제5류)
- 반가공 목재(제19류)
- 낚시용 인공미끼(제28류)
- 쌀(제30류)
- 담배(제34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2010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G0202	신선한 채소
G0203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G0204	코프라
G0208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G0209	사료
G0210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G0211	신선한 과일
G0212	살아있는 식물 및 꽃	G0406	홉(Hop)
G0502	미가공 코코아 원두	G0702	부화용 수정란
G0706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G0707	살아있는 벌레
G0801	살아있는 어패류	G0802	신선한 해초
G1817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G1901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G2001	통나무	G2002	미가공 나무껍질
G2003	펄프제조용 나무조각	G2602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G4304	뉘시용 떡밥, 뉘시용 살아있는 미끼	G4512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G4601	누에, 누에씨		

32류 비알코올성 음료, 맥주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

(Beers; mineral and aerated waters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fruit beverages and fruit juices; syrups and other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 세부설명

- 일반적으로, 성분함량에 따라 제29류 및 제30류에 해당하는 우유, 차, 커피, 코코아 및 초콜릿이 주원료인 음료를 제외한 비알코올성 음료는 32류에 해당함.
- 제32류에 해당하는 알코올성 음료는 맥주가 유일하며, 맥주는 니스 분류 초판부터 제32류로 분류됨. 제33류로의 변경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니스전문가회의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해 왔음. 니스분류 체계가 설립될 당시부터 맥주는 제32류로 분류되었는데 청량음료(soft drink)를 생산 및/또는 판매하는 동일한 업체들에 의한 제조/판매되기 때문임. 맥주는 또한 청량음료 대용으로 인정됨. 통상, 맥주는 제33류의 대부분의 알코올성 음료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지만 맥주가 제32류로 분류된 것은 저함량 때문이 아닌 상업적 유통경로를 고려한 판단임을 주지해야함. 이러한 이유로 맥주를 제외한 모든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함량에 관계없이 제33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음료(제5류)
-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제29류)
-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를 주재료로 한 음료(제30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406	맥주제조용 홉 진액	G0503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일 가공 음료
G0503 G0290 (구)G0503B	음료용 채소진액	G0504	광천수, 생수
G0602	맥주, 맥주용 맥아 즙		

33류 알코올 음료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 세부설명

- 맥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코올성 음료는, 설령 알코올 함유량이 낮더라도 제33류로 분류됨.
- 혼합 알코올성 음료(Pre-mixed alcoholic beverages) 또한 제33류로 분류됨. 그러나, 알코올성 음료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비알코올성 희석음료(non-alcoholic mixers)들의 경우, 예컨대 진저에일(ginger ale)*과 소다수(soda water)**는 제32류로 분류됨.

* 진저에일 [ginger ale] : 에일 또는 비어라고는 하지만 알코올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저(생강)를 주로 하고 레몬 · 고추 · 계피 · 클로브(정향:clove) 등의 향료를 섞어 캐러멜로 착색시킨 것이다. 청량음료로 음용하는 외에 위스키와 같은 양주를 희석할 때 타는 물로도 사용됨.

** 소다수 [Soda Water] : 정제 ·살균한 물에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마개를 막은 청량음료.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시럽이나 과즙 또는 양주류를 타서 마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음료(제5류)
-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제32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601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G0602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G0603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34류 담배, 흡연용품, 성냥

담배; 흡연용품; 성냥

(Tobacco; smokers' articles; matches)

□ 세부설명

- 담배 및 담배기초제품을 포함한 흡연용구들은 제34류로 분류된다. 이런 특수한 용도로 인하여, 다른 류에 속할 수 있는 용구들, 예컨대, 재떨이 및 흡연용 라이터 및 성냥 등은 제34류에 해당됨. 그러나, 자동차용 시가 라이터 및 자동차용 재떨이와 같이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에는 제12류로 분류됨. 또한, 비의료 목적의 담배 대용품 역시 제34류로 분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됨.
-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과 향료와 함께 제34류에 분류되나, 전자담배용 배터리와 충전기는 제9류에 속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비의료용 대용 담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담배(제5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G0901	담배(의료용은 제외)	G0902	흡연용구
G4101	성냥	G410202	흡연용 라이터

35류 광고, 기업관리업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Adverti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functions)

□ 세부설명

- 제35류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다른 상업적 또는 산업적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행위는 제35류에서 정의하는 기업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임. 만약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영활동이 제35류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기업의 특정 활동(specific activities)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행위(all businesses)는 제35류로 분류될 것임. 한편, 기업활동에 가깝지만 동시에 상업적 또는 산업적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류에 속하게 됨. 예컨대, 다양한 금융 및 보험서비스는 제36류, 통신서비스는 제38류, 운송서비스는 제39류, 훈련서비스는 제41류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 “문서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s)”과 관련된 문서의 등록, 전사, 구성, 가공편집 또는 구축과 등록업무”와 같은 행정서비스업 및 데이터 가공편집을 행하는 서비스업은 제35류에 속함. 예컨대, “약속일정 관리업”과 같이 행정업무적 성격인 서비스업의 경우, 비록 다른 류의 서비스업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로 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제35류로 분류됨.
- “상품판매”는 서비스업 그 자체로 간주되지 않지만, 고객이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모아놓는 활동은 제35류에 속함. 이러한 행위는 물적(物的) 소매점포내 또는 우편주문 카탈로그를 통하여 또는 온라인 소매점 방식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

- “광고업”은 제35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고, 예컨대 “대본작성업”이 일반적으로 제41류로 분류되지만, 반면 광고목적인 경우에는 제35류로 분류되는 경우와 같이, 광고목적이 아닌 서비스업은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목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주로 제35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고객이 편리하게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은 서비스업(그러한 상품의 운송은 제외)(예: 소매업, 도매업,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업, 우편주문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업, 웹사이트 쇼핑이나 TV쇼핑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판매업)
-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또는 등록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기재, 전기(轉記), 작성, 편집, 정리 및 수학적 또는 통계적 자료의 편집을 행하는 서비스업
- 광고대행업자의 서비스업 및 직송 또는 우편에 의한 상품설명서의 배포 또는 견본품의 배포와 같은 서비스업을 포함하며, 은행대부 또는 라디오에 의한 선전 등 기타 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도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업적, 공업적 기업에서 실무나 관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자들에 의한 평가나 보고와 같은 서비스업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0101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 작성업, 상품견본 배포업, 광고물 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쇼윈도 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S120401	회계업, 세무대리업
S120501 G1004	인체용 및 동물용 약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S123101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S123102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S1233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S1312	수출입업무대행업	S1370	사무처리업, 복사업
S173501	경매서비스업	S173502	비서업
S173503	자동판매기임대업	S173599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2001	비료 판매대행업	S2002	가공한 곡물 소매업,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S2003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S2004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S2005	광천수 및 생수 소매업, 커피 및 코코아 도매업	S2006	주류 도매업
S2007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S2008	신선한 해초 소매업
S2009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S2010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S2011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젓병 소매업	S2012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S2013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S20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기계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S2015	페인트(도료) 도매업, 염료 소매업	S2016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S2017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유리 기초제품 도매업	S2018	식기 소매업, 육조 및 샤워기 소매업
S2019	덧자리 소매업, 충전용 도매업	S2020	건축용 목재 및 가공목재 판매대행업, 죽재 소매업
S2021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S2022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S2023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S2024	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S2025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S2026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S2027	신발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S2028	급속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S20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S2030	금속제 못/볼트 및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 도매업, 자물쇠 소매업
S2031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이기 도매업	S2032	강철 도매업, 비철금속 소매업
S2033	석재 및 인조석재 중개업, 시멘트 및 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S2034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S2035	시계 구매대행업	S2036	경보기 도매업, 구멍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S2037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타이어 및 튜브 소매업	S2038	봉제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및 제분기기계 판매알선업
S2039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S2040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S2041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ライター 소매업	S2042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S2043	낚시용구 중개업, 스포츠용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S2044	보석 도매업
S2045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속옷/스웨터 및 셔츠 판매알선업, 한복 판매대행업	S2046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S2047	미가공 면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S2048	직물용 실 소매업
S2049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중개업	S2050	끈 소매업, 망 도매업
S2051	악기 구매대행업	S2052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 도매업
S20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S2090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36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Insurance; financial affairs; monetary affairs; real estate affairs)

□ 세부설명

- 제36류에는 금융, 부동산 거래 및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자금의 유동이나 금전/보험 또는 부동산 형태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서비스가 제36류로 분류됨. 대부분의 중개서비스는 제36류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중개업자가 상업 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중개행위를 하기 때문임. 다만, 예외적으로 제39류의 화물운송주선 및 운송 중개서비스는 그 자체가 운송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므로 제39류에 해당됨.
- 제36류에는 특정 항목의 가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 평가 또는 가치평가 서비스가 포함됨. 그러한 감정(평가)서비스는 보험의 담보범위 또는 상품매매의 준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수선비 평가업은 금융평가 서비스업으로서 36류에 속함.
- 제36류 이외에도 감정, 평가 또는 가치평가 서비스가 타류에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사업평가업(business appraisal)”이 “사업경영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산업적/상업적 기업의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35류로 분류됨. 제35류에 해당되는 감정(평가)서비스는 사업의 효율성 내지 고객서비스를 평가하고 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그러한 개선(improvement) 행위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정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감정(평가)의 목적은 재무(금융)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덧붙여서, 어떤 품목이나 활동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 또는 가치평가 서비스는 제42류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흔히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제공되어지기 때문임.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다음과 같은 금융 및 재무관련 서비스업
 - (a) 환전중개 또는 어음교환 등과 같은 모든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서비스업
 - (b) 협동조합식 신용조합, 개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은행 이외의 신용기관의 서비스업
 - (c) 지주(持株)회사의 투자신탁 서비스업
 - (d) 주식 및 자산취급 중개서비스업
 - (e) 수탁인(受託人)에 의해서 보증되는 재무관련 서비스업
 - (f) 여행자수표 및 신용장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
- 임차구매 금융업 또는 임대구매 금융업(hire- or lease-purchase financing)
- 임대, 감정 또는 재무와 같은 건물 부동산 관리인의 서비스업
- 보험업에 종사하는 대리점 또는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업, 피보험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보험계약서비스업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0201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S0301	보험업
S120401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삼림재무평가업, 모직물재무평가업	S1212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S1232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S1312	관세절차대행업, 관세중개업
S173601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S173602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S173699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37류 건설업, 수선업

건축물 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Building construction; repair; installation services)

□ 세부설명

- 제37류의 서비스는 건물, 선박 및 여타의 대규모 건축물 등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행위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제품을 수리 또는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 채광, 가스 및 오일 추출 분야의 활동도 포함됨.
- 또한, 제37류에서는 유지보수와 청소 서비스가 포함됨. 이러한 서비스들과 관련하여 제37류와 제40류(재료처리업)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제37류의 청소,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는 대상물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대상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거나 개선 또는 보존하는 행위를 말함. 반면에, 제40류의 서비스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물품 또는 물질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포함됨(예컨대, “수송기계 광택처리업”은 제37류, “크롬도금처리업”은 제40류로 달리 분류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음).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건물, 도로, 교량, 댐 또는 송전선 등의 건설관련 서비스업과 도장업자, 배관업자, 난방시설업자 또는 지붕설비업자 등 건설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업
- 건설계획 감리와 같은 건설서비스업에 부수되는 서비스업
- 조선(造船)서비스업
- 공구 또는 건축재료의 임대서비스업
- 수리서비스업 즉, 마모, 손상, 파손된 대상물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선서비스업 (불완전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을 요하는 현존건물 또는 그 외 물건의 수리)

- 전기, 가구, 기구, 공구 등 분야의 각종 수리서비스업
- 대상물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서비스 (제37류와 제40류의 차이는 제40류의 주석을 참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의류 또는 수송기계기구와 같은 상품의 보관과 관련된 서비스업(제39류)
- 직물 또는 의류의 염색과 관련된 서비스업(제40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040101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 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설상담업, 건설 및 건축장비임대업	S040102	조선업
S050109	흡연용구 수리업	S050111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S0501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S050118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샤워기 수리업
S050122	문방구 수리업	S050123	가죽/모피 수선업
S050125	가방 수선업	S050126	가구/이불/우편함/훈상제구 수리업
S050127	신발/우산 수선업	S050128	냉방기구/난방기구/환풍기 수리업
S0501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S050130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S050131	수공구 및 수동기구 수리업	S050134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기구 수리업
S050135	시계 수리업	S050136	사무용 기계기구/자동판매기/주유기기/소화기/교통신호기/이미용 의자/구명장치/경보기/잠수용 기계기구/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잔디깎는 기계의 수리업
S050137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S050138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 기계 수리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S050139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 수리업	S050141	가스점화기/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S050142	총포 수리업	S050143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S050144	보석 수선업	S050145	피복/귀금속제 장신구/의류장식품 수선업
S050146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S050151	약기 수리업
S050152	인쇄물/서화/조각품/모형물 수선업	S050199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기타 물품 수리/수선업
S100111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S120101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기계장비임대업
S128101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S128102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S128103	방역소독업	S128104	구두닦이업
S1282	세탁업	S173701	자동차 장식업
S173799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38류 통신업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 세부설명

- 제38류에 있는 서비스업들은 한 개인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제38류는 컴퓨터와 라디오 매체와 같이 서로간 의사소통을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개인과의 의사소통수단을 제공하는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함. 제38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것은 '의사소통 수단'이지 '의사소통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또는 주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단순히 서비스업이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행해졌다고 해서 그 서비스업이 제38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은행활동이 컴퓨터단말기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서비스업은 제36류에 해당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라디오광고서비스업(제35류)
- 전화마케팅(텔레마케팅)서비스업(제35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0601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밴(VAN)통신업, 전자우편전송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S0701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	---	-------	------------------------------------

39류

운송[사람, 동물, 물품] 서비스업, 물품 보관서비스업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Transport;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travel arrangement)

□ 세부설명

-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에 의해 물품 또는 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됨. 항공운송업부터 전기배급업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주요기능이 이동(movement)인 모든 서비스업은 39류로 분류됨. 운송의 목적이 단순히 여행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임. 따라서 앰블런스운송업, 무장차량귀중품운송업 및 구조운송업은 운송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류에 포함되기보다는 제39류에 포함됨.
- 본류는 또한 운송중인지 또는 향후 회수를 위해 같은 위치에 보관중인지와 관계없이 상품보관업 뿐만 아니라 운송 또는 보관목적의 상품 포장업을 포함함. 따라서 창고임대업로부터 냉장고임대업에 이르는 보관을 위한 공간 및 장비임대업 또한 제39류에 포함됨.
- 여행알선업은 제39류로 분류됨. 따라서 대부분의 중개서비스업이 제36류에 포함되는 반면에 화물운송 및 운송중개업은 제39류로 분류됨. 여행알선업을 포함한 여행대행서비스업은 제39류로 분류되는 반면, 제36류에 속하는 여행자수표발행업 및 제43류에 속하는 여행시 임시숙박 또는 식사알선업과 같은 여행대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업은 타류에 포함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역, 교량, 철도페리(rail-road ferries) 등을 이용하는 운송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업
- 운송차량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업
- 해상 예인(曳引), 하역, 항구 및 부두 기능, 난파선 및 그 화물의 인양과

관련된 서비스업

- 운송전 물품의 포장 및 분배에 관련된 서비스업
- 중개인 또는 여행사에 의한 여행, 제품운송에 관한 정보와 관세, 시각표 및 운송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 운송전 차량 또는 물품의 검열에 관련된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안내책자의 배포 또는 라디오를 통한 광고와 같은 운송업자의 광고와 관련된 서비스업(제35류)
- 중개인 또는 여행사에 의한 여행자 수표나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업(제36류)
- 사람 또는 물품 운송중의 보험(상업/화재/생명)에 관련된 서비스업(제36류)
- 사람 또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유지, 보수가 아닌 차량의 유지, 보수 서비스업(제37류)
- 여행사나 중개인에 의한 호텔예약관련 서비스업(제43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080101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 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 제공업	S080102	교통정보제공업
S090101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 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S090102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S090103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S120503	휠체어임대업
S1215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S1233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S173901	상품포장업	S173902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S173999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재료처리업

(Treatment of materials)

□ 세부설명

- 재료처리업은 물품(object), 물질(substance) 또는 재료(material)를 처리 또는 변형시키기 전과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통한 물품, 물질 또는 재료의 본질적 요소의 변형임. 예를 들면, 가죽 무두질(tanning of leather)은 최종생산물을 완전히 새로운 생산물로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의 원재료인 원혁과는 매우 다르게 만듦. 제40류는 또한 무형의 재료처리를 포함하며 따라서 공기정화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분류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료맞춤조립대행업은 제40류에 속하는 중요 서비스업임. 가죽, 실, 고무, 금속 및 플라스틱을 신발로 변형시키는 것은 최종생산물이 그 구성요소의 어떤 하나와도 다른 정도까지 그러한 재료들을 처리하는 것임. 그러나 그러한 변형이 서비스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 수행되어야 함.(제40류 주석 참조)
- 물품의 청소, 유지관리 또는 수리와 같은 활동들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 물품을 원상태 또는 본질적 특성의 변화 없이 보존하기 때문에 재료처리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한 활동들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보존하는 행위들임. 따라서 청소, 유지관리 및 수리서비스업은 타류, 즉 제 37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물품 또는 물질의 변형 및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모든 가공(예: 의류의 염색)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함. 따라서, 유지관리 서비스는 일반

적으로 제37류에 속하지만 이러한 변화(예: 자동차 범퍼의 크롬처리)가 수반된다면 제40류에 해당됨.

- 건물 이외의 물질 또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재료처리서비스(예: 절단, 성형, 연마 또는 금속도금 서비스업)
- 타인에 의한 주문 및 타인이 요구하는 제품 규격에 따라 주문 제작된 서비스(예 : 주문자 제조방식의 자동차 제작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수리업(제37류)
- 주문자 제조방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예 : 주문자 제조 방식의 자동차 도색업(제37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00101	고무 가공업	S100102	플라스틱 가공업
S100103	석재가공업	S100104	광학유리연마업
S100105	목공업, 제재업	S100106	종이가공업
S100107	정제업, 원유가공업	S100108	용수처리업, 폐기물재생업
S100109	마구가공업	S100110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S100111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자화(磁化)처리업	S100112	식물가공업, 염색업
S100113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S100199	기타 가공업
S120102	목재벌목업	S1202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S120502	치기공(齒技工)업	S1214	봉재(縫製)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S1216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S128105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S174001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S174002	발전기임대업
S174003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S174004	예술작품표구업
S174099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41류 교육업, 연예오락업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Education; providing of training; entertainment;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 세부설명

- 교육서비스업은 제41류에 속함. 그것들은 체육강의, 신체훈련 및 동물훈련과 같은 기타 형태의 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한 수업, 세미나, 워크샵 또는 학위프로그램과 같은 더욱 공식적인 또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을 포함함. 교육(education)엔 필수적이지만 교수활동(teaching activities)을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업 또한 제41류에 포함됨. 예를 들면 그러한 서비스업은 서적 또는 교과서출판업(제35류로 분류되는 광고문출판업은 제외) 및 도서대출업을 포함함.
- 모든 정보는 어느 정도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을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정보제공서비스업은 그 정보의 주제에 따라 분류되며 따라서 모든 11개 서비스업류로 분류가능함(서비스업에 대한 일반개요(General Remark (c) for Services)참고). 물론 정보제공서비스업이 교육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제41류에 속함.
- 제41류는 더 나아가 스포츠 및 문화활동 조직업 및 그러한 활동들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임대업을 포함함. 그것은 또한 비디오테이프임대업 및 파티계획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미인선발대회 및 게임서비스업의 조직과 같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업을 포함함. 그러나, 스포츠 및 문화활동들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업은 제41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연예인매니저업은 제35류에 속함. 더 나아가 전시회 및 패션쇼 조직업과 같은 제41류에 속하는 몇몇 문화적 또는 연예오락서비스업은 그것들이 상업, 흥행 또는 광고목적일 경우 제35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사람에 대한 교육 또는 동물 훈련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업
- 사람에 대한 연예,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시각예술 또는 문학작품 등의 공연업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10101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S110102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S110103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S120102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S120103	어업기술지도업	S1202 G5206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S12060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S120901	도서관 운영업
S120902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S120903	속셈학원경영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S120904	모델학원경영업, 연기교육학원업	S120905	보육원업, 유치원 운영업
S120906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S120907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S120999	고시학원 경영업, 꽃꽂이학원경영업	S121001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S121002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S121003	놀이공원 운영업, 동물원운영업
S1216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S1234	사진보도업
S174101	동물훈련업	S174102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소개최업
S174103	번역업, 통역업		

42류 컴퓨터, 과학기술 서비스업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 세부설명

- 본류에 속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의 실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을 포함함. 제42류는 대부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연구 및 디자인서비스업을 포함함. 따라서, 비록 의료치료업이 44류에 포함될지라도 의료연구서비스업은 제42류에 속함. 유전개발분석업, 수질분석업 및 화학분석업과 같은 산업분석서비스업 또한 제42류에 포함됨. 그러나 사람 또는 동물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 또는 수의과적 분석업은 제44류, 사업연구조사업(business research) 및 사업, 마케팅 및 광고 관련 데이터 분석업은 제35류, 금융분석업은 제36류, 조경 디자인업(garden design)은 제44류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함.
- 제42류에는 온라인 통신업이 제38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보기술서비스업 또한 포함됨. 다른 디자인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은 제42류에 속하며,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 및 컴퓨터시스템 모니터링업과 같은 서비스업 또한 42류에 속함.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제42류에 속하는 것이 아님.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통한 메시지 및 영상전송업은 정확히 말하면 제38류에 속함. 유사하게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유지관리 및 수리업은 기타 설치, 유지관리 및 수리업과 같이 제37류에 속함.
- 제42류에는 그러한 서비스가 타류에 속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정보기술상담업 및 통신기술상담업과 같은 기술분야 상담업이 포함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과학적, 기술적 분야에서 평가, 추정,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서비스업(기술상담업 포함)
- 컴퓨터 데이터, 개인 및 금융정보 보안 및 데이터 및 정보 미승인 접속 탐지를 위한 컴퓨터기술서비스업
- 의료 목적의 과학적 연구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사업조사 및 평가업(제35류)
- 워드프로세싱 및 컴퓨터파일 관리서비스업(제35류)
- 재무 및 금융평가업(제36류)
- 채광 및 채유업(제37류)
- 컴퓨터(하드웨어)설치 및 수리 서비스업(제37류)
- 의사, 수의사, 정신분석 등 전문직업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제44류)
- 의료업(제44류)
- 조경업(제44류)
- 법무서비스업(제45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20505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S121301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S121302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S1214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S1233 G390802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데이터 복구업, 컴퓨터임대업	S128106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S128301	화장(化粧)연구업	S174201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S17420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S174203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S174204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S174205	생명공학관련연구업, 화학연구업
S174206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S174299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43류 음식료품 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temporary accomodation)

□ 세부설명

- 제43류는 레스토랑서비스업을 포함함. 또한 음식조달서비스업,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또는 패스트푸드점서비스업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업도 43류에 포함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은 소비자에 의한 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음식 및/또는 음료를 준비하는 것임.
- 제43류는 또한 호텔, 하숙집 및 탁아소(day-nurseries)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임시숙박서비스업이 포함됨. “임시적”이라는 용어는 아파트 또는 기타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제36류에 속하는 서비스업과의 차이점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중요함. 제43류에 속하는 어떤 서비스업, 예를 들면 양로원서비스업(retirement home services)은 장기간의 숙박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이 임시적인지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무기한 누군가의 거주지를 제공하는 아파트임대업과 같은 부동산활동은 아님(제36류).
- 호텔서비스업 관련 모든 활동들이 제43류에 속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함. 예를 들면, 호텔에서 연예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41류에 포함되며, 호텔방을 청소하는 업체의 서비스업은 제37류에 포함됨.
- 더 나아가 임시 시설제공업(temporary accommodation)은 회의실임대업 및 결혼 및 생일파티와 같은 사교이벤트를 위한 방 임대업을 포함함.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업은 제43류에 속함.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일반개요(General Remark (b) for Services)에 따라 그러한 이벤트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가구 및 식기임대업 또한 제43류에 포함됨.

- 여행대행사업은 하나의 류로 분류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함. 사실 그러한 대행사는 다른 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데, 여행티켓 및 여행예약업(제39류), 호텔방 예약업(제43류) 및 문화 또는 연예오락이벤트를 위한 티켓예약업(제41류)이 있음.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여행자의 숙박을 위한 예약서비스업, 특히 여행사 또는 여행중개업자를 통한 서비스업
- 동물수탁관리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영구사용을 위한 주택의 임대서비스업(제36류)
- 여행사에 의한 여행예약업(제39류)
- 식음료품 보존서비스업(제40류)
- 디스코텍 서비스업(제41류)
- 기숙학교업(제41류)
- 휴양 및 요양소업(제44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20602 G0502 G0301	한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제과점업	S120603	주점업
S1207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서비스업, 숙박시설안내업	S121004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S1212	이동식가옥임대업	S174301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S174302	탁아소서비스업	S174303	동물수탁관리업
S174304	회의실임대업	S174399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44류 의료, 미용, 농업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Medical services; veterinary services; hygienic and beauty care for human beings or animals;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 세부설명

- 제44류는 사람 및 동물을 위한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포함함. 그러한 관리는 본질적으로 의학적 또는 미용적인 것일 수 있음. 예를들면 손톱미용업, 애완동물손질업, 물리치료업, 말기환자 간병업 등이 포함됨.
- 일단 동물관리업이 본류로 분류된다면, 제초업 및 조경업과 같은 농업, 수산양식, 원예, 임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임.
- 그러나 본류는 의학 및 수의과서비스업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질적 의료 또는 위생관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위한 것임을 주의해야 함. 예를들면, 사람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분석업은 44류에 속하는 반면에 모든 이론적인 연구 또는 분석서비스업은 기타 과학적 및 기술적 서비스업과 같이 제42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X-레이 검사 및 혈액샘플 채취 등) 개인의 치료와 관련되는 의료분석서비스업
- 인공수정서비스업
- 약품 조제 자문업
- 동물 사육업
- 정원손질 등 식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꽃의 배치 및 정원조경 등 꽃 관련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해충구제업(농업/수산양식업/원예업/임업 목적이 아닌 것)(제37류)
- 관개시설을 위한 설치, 보수 서비스업(제37류)
- 앰블런스 운송업(제39류)
- 동물도살 및 박제업(제40류)
- 목재벌목 및 가공업(제40류)
- 동물훈련서비스업(제41류)
- 육체적인 운동을 위한 헬스클럽업(제41류)
- 의료목적의 과학적 연구조사업(제42류)
- 동물수탁관리서비스업(제43류)
- 양로원업(제43류)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20102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S120103	어업서비스업,
S120501	약국업	S120502	치과서비스업
S120503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영양소서비스업	S120504	동물병원업, 수의업
S128302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S128303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S128304	안마업, 지압업	S174401	꽃꽂이업
S174402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S174403	애완동물 미용실업
S174499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45류 개인 또는 법무 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Legal services; security service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tangible property and individuals;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 세부설명

- 제45류에 포함된 사적인 및 사회적인 서비스업은 매우 구체적임. 몇몇 예들은 결혼중개업, 점성업(horoscope casting), 종교적 제의식 진행업 및 장의업임.
- 법무서비스업은 주로 변호사에 의해 제공되지만 이것이 제45류에 속하는 법무서비스업 분류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님. 입양소개업, 중재서비스업 및 도메인네임 등록업과 같은 활동들은 개인 또는 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그것들은 그 활동의 법적 내용들 때문에 제45류로 분류됨.
- 보안서비스업은 제45류에 속하는 이전 두 가지 분야의 활동의 결과물임. 그러한 서비스업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 또는 신체적 보호를 위한 것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의 경호 또는 보호 관련 서비스업은 제45류에 속함. 그러나 인터넷보안업 및 데이터보안업은 제42류에 속하는 기술서비스업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함.
- 대표명칭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및 사회적인 서비스업”은 이 문구가 개인의 수요와 관련되기만 하면 제45류에 분류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기능하도록 의도

한 것은 아님. 개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업은 타류에 포함되며 그것들이 단순히 사적이기 때문에 또는 그 활동이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기 때문에 제45류에 포함되지는 않음. 예를 들면, 은행업이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금융업이므로 항상 제36류로 분류됨.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법률가가 개인, 개인의 그룹, 조직 및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업
- 개인의 물리적 안전과 유형의 재산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및 탐정서비스업
- 에스코트 서비스업, 결혼중개업, 장의사업 등 사회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기업 경영 또는 사업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서비스업(제35류)
- 금융 또는 재무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제36류)
- 여행안내업(제39류)
- 경비운송업(제39류)
- 교육 관련 서비스업(제41류)
- 가수 또는 댄서의 공연업(제41류)
-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래밍업(제42류)
- 컴퓨터 및 인터넷 보안상담업 및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제42류)
- 사람 또는 동물을 위한 의료/위생/이미용 관련 서비스업(제44류)
- 특정 임대업(니스분류 서비스업 목록 및 일반주석(b) 참조)
- * 일반주석(b) : 임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임대되는 목적물(예: 38류로 분류되는 전화기임대업)을 수단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됨. 대여(leasing) 서비스업은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유사하며 따라서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임차구매 금융업 또는 임차구매 금융업(hire or lease-purchase financing)은 금융서비스업으로서 36류로 분류됨.

□ 개별 상품(예시) 및 유사군 코드 현황

S120402	법무서비스업	S1214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S128401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장례복대여업	S128402	애완동물 장의업
S174501	가사서비스업	S174502	사설탐정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S174503	경호업, 경비업,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대여업	S174504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S174505	결혼식장업	S174506	운명감정업, 작명업
S174507	애완동물 돌보기업	S174599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NICE 국제상품분류 11판
Class Heading 세부설명

- 영 문 -



Class 1

Chemicals for use in industry and other general applications, are in Class 1. If a particular use is indicated, however, some chemicals can belong to other classes. For example, hydrogen per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is in Class 1, hydrogen peroxide for cosmetic purposes is in Class 3 and hydrogen peroxide for medical purposes is in Class 5.

According to the Explanatory Note, Class 1 includes mainly "chemical product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agriculture, including those which go to the making of products belonging to other classes". The term "chemical products" in this instance refers to man-made as well as natural products. This justifies the inclusion in Class 1 of synthetic products such as artificial resins and of natural products or raw materials such as raw salt, protein, albumin and lactose. However, certain natural materials in their raw state are not in Class 1, either because of their function or because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goods belonging in other classes, for example, natural resins in Class 2, wax and petroleum in Class 4, rubber in Class 17, and chalk in Class 19.

Many goods in this class are used for manufacturing products that belong in other classes. For example,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sually in the form of viscous liquids, are in Class 1. When artificial resins are manufactured into semi-finished products, for example in the form of rods or sheets, they are no longer in Class 1 but in Class 17. Further manufacture turns these semi-finished products into finished goods that are in other classes, such as Class 20.

It should be noted that manure and other products for enhancing plant growth are in Class 1, while pesticides, fungicides and herbicides are in Class 5 because their primary function is to prevent and treat plant diseases, even though this may ultimately encourage plant growth.

Class 2

Class 2 basically includes paints, varnishes, lacquers and other preparations that are used as coatings, either for decorative or protective purposes. Very few coatings are found in classes other than Class 2, the most significant group being building materials in Class 19, such as materials for making and coating roads, fireproof cement coatings, bituminous coatings for roofing, and the more general entry "coatings [building materials]". Although some of these goods may be considered to have a protective function, they are nevertheless in Class 19 because their primary use is in building. The protective coatings in Class 2 are usually in the form of paints or oils used on wood or to prevent rust. It is worth bearing in mind, however, that oils for the preservation of masonry and leather are in Class 4 together with industrial oils, and oils for the preservation of food are in Class 1.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whilst raw natural resins are in Class 2,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are in Class 1 and artificial resins as semi-finished products are in Class 17. Raw natural resins are in Class 2 because they are used in primers, protective coatings, paints, lacquers and varnishes, which are all goods belonging to Class 2.

Mordants are goods which could belong to either Class 1 or Class 2, depending on their nature. The mordants in Class 1 are corrosive chemicals (usually acids) used primarily for etching, whereas the mordants in Class 2 are those used mainly to prepare a surface to accept a dye. As with the raw natural resins, the function of these mordants and their close association with other Class 2 goods justify their inclusion in Class 2, rather than in Class 1.

Class 3

Toiletry and sanitary preparations, as well as general cleaning preparations, are usually in Class 3, the main exception being when they are used for medical purposes, in which case they are in Class 5.

There are in fact a number of preparations which could possibly be included in other classes that are classified in Class 3 when they are used for cosmetic, cleaning or laundry purposes. For example, ammonia is in Class 1 when used for industrial purposes but in Class 3 when used as a detergent, and lotions can be in Class 5 when use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but in Class 3 when used for cosmetic purposes. Some products, however, are always in Class 3 no matter what their purpose, such as essential oils and perfumes.

Items used for personal hygiene or sanitary purposes, are classified either in Class 3 or Class 5 depending on their nature or function. Thus whilst soaps and shampoos in general belong in Class 3, medicated soaps and shampoos are in Class 5. Similarly, products intended for use with animals can be divided the same way so shampoos for animals are in Class 3 but medicated and insecticidal shampoos for animals are in Class 5.

Class 3 largely consists of preparations. However, there are some consumer articles included in this class when they are used for one of the Class 3 purposes or impregnated with a Class 3 preparation, for example, abrasive paper, alum stones, pumice stones, or cloths impregnated with cosmetic lotions or a detergent for cleaning. Articles such as cotton stick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urpose hence in Class 3 when for cosmetic purposes but in Class 5 when for medical purpos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generally, Class 3 does not include apparatus. Cosmetic utensils and clean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such as electric toothbrushes, combs, and cloths for cleaning, are most commonly classified in Class 21.

Class 4

Class 4 contains primarily industrial oils, greases and lubricants, as well as fuels and illuminating substance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machines, apparatus and lamps that use Class 4 fuels and illuminants are not in Class 4. For example, lamps for lighting are in Class 11, including lamps powered by electricity or by a Class 4 fuel.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are in Class 4, even if they are scented. This may seem inconsistent since other items for lighting are in Class 11 and scents or perfumes are in Class 3. However, candles are neither apparatus for lighting nor perfumes, they are considered as illuminants and, in fact, are made of the illuminant that makes them work, namely, wax.

Amongst the fuels included in Class 4 there are certain hydrocarbons which may be classified in Class 1 when used for chemical purposes and in Class 4 when used as a fuel, for example, benzene is in Class 1 while benzene fuel is in Class 4.

Finally, this class include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These compositions are used, for example, in sweeping roads or in building construction, to prevent dust from floating in the air. They can also be used to absorb, and thus prevent, chemical spills from expanding and damaging the environment. They are included in Class 4 because they are usually oil - or grease - based products.

Class 5

The majority of goods found in Class 5 are pharmaceuticals, or medical and veterinary preparations. Other items in the Class Heading and in the Alphabetical List derive their classification in Class 5 from this principle.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of the goods in Class 5 are preparations. However, there are some consumer articles included in this class, such as adhesive plasters and bandages for dressings. It should further be noted that the bandages included in this class are used for holding dressings in place. Bandages used to support muscles or any part of the body, or for orthopaedic purposes, are in Class 10.

Dietary supplements are in Class 5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These are substances that may or may not be nutritional, such as proteins, vitamins, trace elements, herbs, dietary fibres, glucose and enzymes, in the form of pills, capsules, tablets, powders or liquids. They can be used to supplement a normal diet or just because they are considered beneficial for the health.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foodstuffs and beverages, such as cereal bars, teas, biscuits and soft drinks, as well as food for animals, that contain dietary supplements, or that are, for

example, lower in calories, salt, sugar or fat, are classified in Class 5 only if they are specified as being adapted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If they are not designated as being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they must be classified in one of the food or beverage classes and must be worded with adequate specificit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lass (29, 30, 31 or 32).

The reference to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in the Class Heading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toiletries in Class 3 and medicated preparations or preparations intended for medical purposes in Class 5. Sanitary preparations in Class 3 are used in personal cleaning or grooming activities, and include goods such as toilet soaps, non-medicated shampoos and personal deodorants.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in Class 5 go beyond cleaning or grooming, they sterilize or disinfect, or may be medicated preparations, which are Class 5 characteristics. Goods in Class 5 therefore include disinfectant soap, medicated soap, medicated shampoos and pediculicidal shampoos. The French equivalent "produits hygiéniques" also refers to menstrual products such as sanitary pads. Based on this part of the Class Heading and on the Explanatory Note, absorbent pants and napkins for incontinence and babies' diapers are included in Class 5 as well.

Disinfectant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vermin, fungicides and herbicides are also in Class 5 because they destroy harmful microorganisms, animals and veget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infec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health.

It should be noted that blood, living tissues and biological tissue cultures are also in Class 5 when specified as being for pharmaceutical,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ut in Class 1 when they are for industrial or scientific purposes.

Class 6

Class 6 is one of the classes that includes unworked or semi-worked materials, namely,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and ores. It also includes finished good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common metals, they belong in Class 6. Typical examples are figurines or statuettes. Because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se goods cannot be identifi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r Explanatory Notes of the Classificatio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different "materials classes", for example, in Classes 6, 14, 16 or 19 if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common metals, precious metals, paper, or marble.

Goods made of common metals should not be classified in Class 6 if they can be classified in other appropriate classes without reference to material composition (see the excluding Explanatory Note of Class 6 which specifically excludes "certain goods made of common metal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 or purpose"). For example, machines, motors and engines should not be classified in Class 6 even though they are made primarily of metal because there is an appropriate class in the Classification for these goods, namely, Class 7. As Class 6 includes goods made of a certain material, namely, metal, a decision needs to be made when to classify goods made of metal in Class 6 and the same goods, when not made of metal, in another class. Generally, building materials of metal and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are in Class 6 while building materials not of metal are in Class 19 and small items of hardware made of non-metallic materials are in Class 20. Note that many of these items can have both metal and non-metallic elements. In such cases, classification is dependent on the predominating el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oods in Class 6 are goods made of metal that do not perform a specific task; they are generally simple pieces of metal. Goods that perform a task belong in other classes,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such as machines in Class 7 and hand tools in Class 8.

Transportable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of metal are also included in Class 6. This includes facilities such as swimming pools and skating rinks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rather than by function.

Class 7

Class 7 encompasses primarily power-driven machines and machine tools, parts of those machines, motors and engines and parts of motors and engine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cla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it together with Classes 8 and 12.

The classification of tools depends on their mode of operation. In principle, power-operated tools are in Class 7 while hand-operated hand tools are in Class 8. For example, "hammers [hand tools]" are in Class 8, while "electric hammers" are in Class 7. However, there are certain hand tools or implements, like depilation appliances, nail clippers and razors, that are in Class 8 even if they are electric. They are not in Class 7 because they do not fit in the concept of machines or machine tools. The machines and machine tools in Class 7 are usually industrial or household machines that use mechanical or electrical power to perform a task such as cleaning, cutting, shaping, welding, drilling, pumping, assembling or loading/unloading.

Parts of machine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7. Goods that normally belong in other classes, such as hammers in Class 8 and brushes in Class 21, are classified in Class 7 when they are specified as being "parts of machines".

Motors and engines, whether for machines or for vehicles, are classified in Class 7, except for land vehicle motors which are in Class 12. Parts of all kinds of motors, including parts of land vehicle motors, are in Class 7. The logic behind the classification of these goods is that

motors for land vehicles are usually assembled by the vehicle manufacturer and should thus be in the same class as land vehicles, namely, Class 12. Motor components, however, are usually made by a different manufacturer regardless of the kind of motor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classified in Class 12 when they are for land vehicle motors.

It should be noted that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are classified in the same way as motors and engines, i.e., they are all in Class 7, except for couplings and transmission components for land vehicles, which belong in Class 12.

Class 8

According to its Explanatory Note, Class 8 includes mainly "hand-operated implements used as tools in the respective professions". Under these parameters, Class 8 includes many tools that perform a task, such as drilling, shaping, cutting or piercing. Although many of these tools are described in the Alphabetical List as "hand tools", the criterion to determine their classification in Class 8 is not so much that they are hand-held, but rather their mode of operation, i.e., that they are operated by hand and not by electricity or any other power source. Thus, hand-operated tools such as hammers are in Class 8, while electric or pneumatic hammers, which can also be hand-held, are in Class 7.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certain hand tools are classified in Class 8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lectric or non-electric. These are small hand implements such as depilation appliances, razors, hair clippers and manicure sets that cannot be considered as "machines" or "machine tools" in Class 7.

Handles for hand-operated tool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8 as they are seen as being an intrinsic part of the tool. Thus, scythe handles and knife handles are in Class 8 but it is worth bearing in mind that other types of handles would be classified in other classes according to the object they are part of, for example, broom handles belong in Class 21 along with the brooms.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8 and Class 21 is sometimes problematic, as it may be difficult to decide whether certain goods should be considered as a hand tool in Class 8 or as a kitchen or household utensil in Class 21. Table cutlery and knives are in Class 8, whereas Class 21 includes serving utensils and certain kitchen tools, such as corkscrews, nutcrackers, pie servers and sugar tongs. Other tools used in the kitchen do belong in Class 8, however, because of their cutting nature, including non-electric cheese slicers, non-electric pizza cutters, non-electric tin openers and vegetable choppers. Similar goods when powered by electricity would belong to Class 7, for example, electric knives and electric tin openers.

The term "cutlery" in the Class Heading justifies the inclusion in Class 8 of hand-operated cutting tools and bladed weapons, such as knives, swords and scissors. Certain specialized

cutting instruments, however, are classified in other classes, for example, scalpels in Class 10 and fencing weapons in Class 28.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erm "cutlery" in the Classification also refers to knives, forks and spoons for eating (the term has been translated into French as "coutellerie, fourchettes et cuillers" because "coutellerie" refers only to knives and other cutting instruments).

Class 9

Class 9 is often described as the class of electronic equipment but, in fact, it includes a wide variety of goods. There are five general areas of good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cientific or research purpos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audiovisual equipment, apparatus and devices for controlling the distribution and use of electricity, op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and safety equipment. Of course these groups of products are very general and do not comprise all goods in Class 9, which is, together with Class 1, one of the largest classes of the Nice Classification.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clothing are classified in Class 9 based on the reference to "life-saving... apparatus" in the Class Heading. The inclusion of protective clothing in this class may seem strange at first, but it becomes more understandable if the term "life-saving" is interpreted in the sense of "preventing serious or fatal accidents", as well as in the sense of "saving human lives". Therefore, protective clothing belongs in Class 9 as much as goods such as breathing apparatus (except for artificial respiration), life belts, life jackets and bullet-proof waistcoats do. Examples of protective clothing in Class 9 are clothing and sho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clothing specially made for laboratories, protective helmets (including for sports), mouth guards and head guards for sport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protective paddings used as parts of sports suits are classified in Class 28 as sports articles. These goods are not considered to be "life-saving" since their function is to protect against bumps and bruises that are not usually fatal or physically incapacitating.

It should also be mentioned that certain apparatus in Class 9 may be classified in Class 10 when used for medical purposes, for example, lasers, X-ray apparatus, respirators and testing apparatus.

Digital goods such as music or electronic books which are intended to be downloaded onto an end user's electronic device are in Class 9. The provision of non-downloadable digital goods on-line is considered to be a service in Class 41.

Class 10

Class 10 includes mainly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that are generally used for the diagnosis or treatment of human or animal diseases and conditions. The words "apparatus" and "instruments" are important as they help to differentiate Class 10 goods from the medical and veterinary "preparations" in Class 5. In a very general manner, Classes 5, 10 and 44 are the "medical/veterinary classes" of the Classification, the first comprising medicines, the second one medical and veterinary equipment, and the third one medical and veterinary services.

Certain apparatus and instruments classified in other classes belong in Class 10 when they are used for surgical, med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For example, needles in general are in Class 26 and lasers in Class 9, but when specified as being for medical purposes, they are in Class 10. The same happens with certain goods that are not apparatus or instruments, like clothing, furniture and bedding. For example, clothing especially for operating rooms, beds specially made for medical purposes, and childbirth mattresses are in Class 10. Nevertheless, adding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to any indication of good does not automatically place that good in Class 10. For example, sterilizers are in Class 11, even if they are used for sterilizing medical instruments. The Alphabetical List should thus be consulted when classifying good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Class 10 further includes prostheses and artificial implants. The term "artificial" is important for the classification of implants in Class 10 because living tissues used as surgical implants are in Class 5.

There are bandages in Class 10 and in Class 5. The difference is that the bandages in Class 10 are supportive, i.e., they are used for supporting injured muscles or parts of the body and thus have a therapeutic function, while the bandages in Class 5 are used simply to bind wounds or hold dressings in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certain articles, usually made of rubber, also belong in Class 10, such as feeding bottle teats and valves, teething rings, babies' pacifiers [teats], condoms and gloves for medical purposes. Objects in the nature of sex toys are also included in Class 10 as these are not the sort of playthings considered appropriate to Class 28.

Class 10 also contains apparatus that, whilst not being necessarily used directly for medical treatment, helps to maintain or improve human health. Examples include massage apparatu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Class 11

The apparatus included in Class 11 can be characterized as being for "environmental control" in the sense that they chang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g., by heating, cooling, drying, purifying or disinfecting air or water. Consequently, Class 11 includes 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and air purification equipment, sanitary installations, water supply and water treatment installations, refrigerating and freezing equipment, as well as apparatus for cooking, heating and refrigerating food.

There can be confusion with certain electrically heated apparatus in other classes. Unlike Class 11 apparatus, electrically heated apparatus in other classes use heat in order to perform a task rather than having heating as their primary function. For instance, electric glue guns are in Class 7 because their purpose is to apply glue (even though heat is used to melt the glue in the gun). Glue-heating appliances are in Class 11 because their purpose is to melt the glue, and keep it viscous using heat, so it can then be applied to a surface using a separate too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oking apparatus and utensils in Class 11 have a heat source that is part of the apparatus, for example, microwave ovens, bakers' ovens, electric kettles and electric pressure cookers. Cooking utensils that do not incorporate a heat source are, generally, in Class 21, such as pots and pans for cooking, non-electric kettles and non-electric pressure cookers.

Pipes as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are in Class 11. There are also pipes in Classes 6, 17 and 19. The pipes in Class 11 are those that are directly attached to, and are specialized parts of, installations such as sinks, showers and toilets. The pipes that bring water to and from these installations are building materials and are thus classified in Class 6 if they are made of metal and in Class 19 if they are rigid and not made of metal. Flexible pipes made of non-metallic materials are in Class 17.

Class 11 also contains lighting apparatus and certain accessories related thereto, for example, electric lamps, light bulbs and lamp shad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mps and other lighting apparatus in Class 11 are for lighting purposes. Vehicle and laboratory lights are thus in Class 11 and not, respectively, in Classes 12 and 9. Lights that are in classes other than Class 11 are used mainly for purposes other than lighting, for example, lamps for medical purposes are in Class 10 and signalling lights and traffic-light apparatus are in Class 9.

Finally, Class 11 is the class for electrically heated clothing, such as electrically heated socks, because of the heating function of such goods. The same is true of blankets and footmuffs that are in Class 11 when they are electrically heated (and not for medical purposes) but which would otherwise belong in other classes.

Class 12

Class 12 includes all apparatus and machin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eople, animals or things by land, air or water. The term "transport" is significant since there are goods in other classes that could be deemed as providing transport when, in fact, that is not the primary purpose of the goods. For example, self-propelled road sweeping machines and snow ploughs are in Class 7. Although these items move, their purpose is not transport but rather to perform a task, specifically road sweeping or snow removal. Conversely, bicycles are in Class 12 and not in Class 28 because they provide transport even if that transport is for sports or recreational purpose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not all parts of vehicles are in Class 12. Land vehicle motors are classified in Class 12, whereas all other motors and engines, whether for machines or for other vehicles, are in Class 7. Parts of any kind of motor or engine, including parts of land vehicle motors, are in Class 7 however. The logic behind the classification of these goods is that motors for land vehicles are usually assembled by the vehicle manufacturer and should thus be in the same class as land vehicles, namely, Class 12. Motor components, however, are usually made by a different manufacturer regardless of the kind of motor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classified in Class 12 when they are for land vehicle motors.

As regards couplings and transmission components for vehicles, the purpose also affects classification. Those for land vehicles belong in Class 12 and those for other purposes belong in Class 7.

There are other specific items that are not in Class 12 although they are associated with vehicles and apparatus for transport. This usually occurs when the item in question is not a structural part of the vehicle. Thus, goods such as locks for vehicl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material (in Class 6 or Class 20), mileage recorders for vehicles and vehicle radios are in Class 9 and lights for vehicles are in Class 11. The Alphabetical List should thus be consulted for classification of vehicle parts.

Class 13

Class 13 includes firearms, ammunition, projectiles, explosives and pyrotechnical products. Parts of these goods and certain accessories therefor are also in this class.

The goods in this class are powered by an incendiary, explosive or propellant force. Goods are not classified in Class 13 just because they are weapons. Bladed weapons such as knives are in Class 8, or in Class 28 if they are used for sports, like fencing weapons. With some exceptions, for example,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the weapons in Class 13 are mostly explosive devices.

Sometimes, the term "weapon" is used in Class 13 to distinguish items in this class from similar items that have a different function and that are therefore classified elsewhere, such as "air pistols [weapons]" in Class 13 and "toy air pistols" in Class 28.

The example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is pretty obvious. However, the difference might be less obvious in the case of harpoon guns. "Harpoon guns [weapons]" is in Class 13 while "harpoon guns [sports articles]" is in Class 28.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apon and non-weapon harpoon guns has been considered significant enough to warrant their classification in different classes. Otherwise, explosives and firearms are all in Class 13, whether for military or sporting use.

Class 14

Jewellery and imitation jewellery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as well as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are in Class 14.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at certain goods, such as brooches and pins, are classified in Class 26 when they are dressmakers' articles rather than jewellery. Another thing worth noting is that if jewellery is considered to be for medical purposes, such as anti-rheumatism bracelets, then it belongs in Class 10 on the basis of function.

Key rings, key chains and charms therefor also belong in Class 14 but it should be noted that any charms that are not for jewellery, key rings or key chains would belong in Class 26. This is also the case for similar goods such as beads, other than those for making jewellery; it is the function of being for jewellery that leads to the classification of such goods in Class 14.

Another category of goods in Class 14 is rosaries and other kinds of prayer beads. Although these goods have a practical function, rather than being simply for ornamental use, their similarity in form and construction to jewellery justifies their inclusion in Class 14.

Generally, watches, clocks, stopwatches and other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are in Class 14 as well. Nonetheless, some chronometric instruments are in Class 9 if their purpose is the measurement or recording of time, like in the case of time clocks. Smartwatches are also included in Class 9 as it is considered that they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features beyond time-keeping which justify classification in that Class.

Class 14 is one of the classes that includes unworked or semi-worked materials, namely,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It also includes finished good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precious metals, they belong in Class 14. A typical example is figurines or statuettes. Because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se goods

cannot be identifi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r Explanatory Notes of the Classificatio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different "materials classes", for example, in Classes 6, 14, 16 or 19 if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common metals, precious metals, paper, or marble.

Whilst the Explanatory Note mentions that "certain goods made of precious metals or coated therewith" belong in Class 14, goods in precious metals should not be classified in Class 14 if they can be classified in other appropriate classes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For example, silver tea services should not be classified in Class 14 even though they are made of silver because there is an appropriate class in the Classification for these goods, namely, Class 21, the class of household and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Class 15

All musical instruments, their parts and their accessories are in Class 15 as well as certain goods that create music but are not played by a musician, for example, music boxes. However, goods that affect sound produced from another source, like music amplifiers or loudspeakers, and apparatus that reproduce music, such as compact disc players, are in Class 9. Class 15 also includes good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music, such as colophony for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music stands, tuning forks and conductors' batons.

Class 16

Class 16 comprises mainly paper, cardboard, printed matter such as books, pamphlets and brochures, and materials for printing and bookbinding, as well as writing materials and office requisites such as writing paper, envelopes, pens, ink, paper-clips, adhesive tapes, correcting fluids and staplers.

This class also contains office equipment such as mimeograph, sealing, addressing, franking and bookbinding machin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photocopiers, computers and printers for use with computers are in Class 9, printing presses and printing machines are in Class 7, and toners for photocopiers and printing ink are in Class 2. Note that 3D printers are also in Class 7 as they are considered to be machines that are used for manufacturing objects.

The term "artists' and drawing materials" in the Class Heading refers to traditional (non-electronic) art media such as drawing pens, canvas for painting, painters' palettes and brushes, and modelling clay. However, paints are in Class 2 and hand tools for use by artists,

such as spatulas and sculptors' chisels, are in Class 8.

"Teaching materials" are in Class 16 as well. The term refers to goods such as blackboards, terrestrial globes, calculating tables and biological samples for use in microscopy. It should nonetheless be noted that "teaching apparatus" are in Class 9, in particular if they are audiovisual. Resuscitation mannequins are another example worth mentioning as they are considered to be "teaching apparatus" and thus are classified in Class 9.

Whilst books in printed form are in Class 16,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electronic books or other publications that are intended to be downloaded onto an end user's electronic device are in Class 9. The provision of such electronic publications in a non-downloadable form on-line is considered to be a service in Class 41.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y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paper or cardboard, they belong in Class 16. A typical example is bags used for packaging. Because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se goods cannot be identifi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r Explanatory Notes of the Classificatio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different "materials classes", thus, packaging bags, pouches or envelopes are in Classes 16, 17, 18 or 22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paper, rubber, leather or textile.

Concerning the example relating to "bags for packaging"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it should be noted that plastic packaging that is a substitute for paper, like plastic films, sheets, bags or envelopes, is in Class 16 as well.

Class 17

Class 17 is one of the classes that includes unworked or semi-worked materials, namely,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and mica, as well as plastics and resins in extrud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It also includes finished good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or mica, they belong in this class. For example, window stops do not correspond to the functions or purposes list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f the Classification and are thus classified in the corresponding "materials classes", namely, Classes 6 or 17 if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metal or rubber, and Class 20 if they are made of any other material.

Also, goods that provide insulation are in Class 17 even if they would be in other classes if not specified as being for insulation purposes. Examples of this are insulating paint, fabric

and paper, which are all in Class 17 rather than the typical classes for those goods, namely, Classes 2, 24 and 16, respectively.

Finally, flexible pipes, tubes and hoses that are not made of metal are in Class 17, such as connecting hoses for vehicle radiators and watering hoses. Rigid pipes, not of metal, for building are in Class 19.

Class 18

Class 18 is one of the classes that includes unworked or semi-worked materials, namely, leather, imitation leather and animal skins. It also includes finished good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leather or imitations of leather, they belong in Class 18. For example, clothing and shoes of leather are in Class 25 because this is the appropriate class for clothing, footwear and headgear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Conversely, there is no appropriate class for packaging such as bags and pouches, which are thus classified in Class 18 if they are made of leather, and in any of the other "materials classes", for example classes 16, 17 or 22, if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paper, rubber or textile.

Items us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al goods, such as suitcases and other travelling bags, are in Class 18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Umbrellas and walking stick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18.

Finally, many items in Class 18 relate to animals due to the mention of whips, harness and saddlery in the Class Heading. Some examples are bits for animals [harness], harness fittings, nose bags [feed bags], covers for horse saddles, stirrups, leashes and collars for animals and also clothing for pets which is classified in Class 18 and not in Class 25.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re are animal-related items that are not in Class 18, such as dog kennels in Class 20 and horse brushes in Class 21. Antiparasitic collars for animals are in Class 5, even though collars for animals are generally in Class 18, as the fact that they are specially designed to deliver an antiparasitic agent justifies their inclusion in Class 5.

Class 19

Most of the items in Class 19 are non-metallic building materials; building materials made of metal are in Class 6. Anything that constitutes a structure and is not made primarily of

metal, from bicycle parking installations to entire buildings, can be classified in Class 19. Also, some specialized building materials are in Class 19 when they might otherwise be classified in another class. One such example is bituminous coatings which could be in Class 2 as a coating but are in fact classified in Class 19 because they are considered to be a specialized building product. Complete homes that are built entirely in a factory and then transported and installed on-site are in Class 19 if they are composed primarily of non-metallic components, and in Class 6 if they are primarily made of metal.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re in Class 19.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also pipes in Classes 6, 11 and 17. Pipes are considered as building materials and are thus classified in Class 19 if they are rigid and non-metallic, and in Class 6 if they are of metal (whether rigid or flexible). Flexible non-metallic pipes such as watering hoses or connecting hoses for vehicle radiators are in Class 17, and pipes that are directly attached to, and are specialized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such as sinks, showers and toilets, are in Class 11.

Class 19 includes materials such as stone, concrete and marble. It also includes certain finished good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y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Busts, figurines and other artistic objects made of stone, marble or other Class 19 materials are thus in Class 19 since there is no specific class in the Nice Classification for three-dimensional works of art.

Class 20

Furniture is generally in Class 20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Furniture adapted for a special use i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purpose, such as furniture especially made for laboratories in Class 9 and dentists' armchairs in Class 10.

Bedding, such as mattresses and pillows, is also in Class 20, but not bed linen, eiderdowns, sleeping bags and blankets, which are in Class 24 as textile goods.

The list of materials in the Explanatory Note controls the inclusion in this class of goods that are classified by material composition.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the materials mentioned in the Explanatory Note, they belong in Class 20. Typical examples are figurines or statuettes. Because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se goods cannot be identifi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r Explanatory Notes of the Classificatio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different "materials classes", for example, in Classes 6, 14, 16, 19, 20 or 21.

Furthermore, Class 20 is the class for non-metallic goods that often have a counterpart in

Class 6 when those goods are made of metal. For example, metal containers for storage or transport are in Class 6, while non-metallic ones are in Class 20. There are containers in Class 21 as well, but these are limited by the Class Heading to those that are for household or kitchen use and are thus classified according to that purpose,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Many hardware items of plastic are in Class 20, their equivalent of metal being in Class 6.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hardware related to curtains is classified in Class 20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Also non textile curtains, such as, bamboo or bead curtains, as well as window blinds or shades for interior use, are in Class 20 because they are considered as furnishings.

Class 21

As indicated in the Class Heading and the Explanatory Note, this class includes mainly containers and small hand-operated utensils and apparatus for household and kitchen use. This language covers a very broad range of products, some of them being very much related to certain products in Classes 7, 8 and 11.

The criterion used to classify containers in Class 21 is function or purpose. From pails and garbage cans to vases, bottles and indoor aquaria, they are all in Class 21 as household or kitchen containers, regardless of material composition. Conversely,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are classified by material composition, in Class 6 if they are of metal and in Class 20 if they are not of metal. It should be noted that according to General Remark (f) for Goods, containers that are specially adapted to the shape or form of the product they are intended to contain are, in principle, classified in the same class as that product. For example, containers for contact lenses are in Class 9 together with contact lenses, and cases for musical instruments are in Class 15 together with musical instruments.

Containers and certain utensils used as tableware, such as dishes, bowls, drinking glasses, mugs, tea services and pie servers, are in Class 21. Important exceptions are knives, forks and spoons, which belong in Class 8. It is worth mentioning that while serving utensils, such as sugar tongs and serving ladles, are in Class 21, tongs and ladles used as hand tools are classified in Class 8.

The household and kitchen utensils and apparatus in Class 21 are mostly hand-operated (i.e. non-electric), and any electric counterparts are in other classes. For example, apparatus for cleaning and polishing, and apparatus for kitchen use, such as mincing, grinding, pressing or crushing are in Class 21 when they are non-electric and in Class 7 when they are electric.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most combs and brushes (these terms are followed by an asterisk in the Alphabetical List), including cosmetic brushes and toothbrushes, are in Class 21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lectric or non-electric, while manicure,

pedicure and other cosmetic implements, such as nail files, depilation appliances and razors, both electric and non-electric, are classified in Class 8.

Cooking apparatus in Class 21, such as kettles and pressure cookers, are non-electric. Cooking apparatus that has an integrated heat source, like electric kettles and electric pressure cookers, are in Class 11 together with other electrically heated cooking apparatus.

Finally,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Class 21 is one of the classes that includes unworked or semi-worked materials, in this case glass, with the exception of building glass which is in Class 19 as a building material. Class 21 also includes glassware, porcelain and earthenware that cannot b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In the Nice Classification, finished goods are in principl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 or purpose. Goods that cannot be classified in this wa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ther criteria, like the material of which the goods are made (see General Remark (a) for Goods) and, if they are made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or glass, they belong in Class 21. Typical examples are busts, statuettes and works of art. Because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se goods cannot be identified in any of the Class Headings or Explanatory Notes of the Classification,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composition in the different "materials classes", for example, in Classes 19, 20 or 21 if they are made, respectively, of marble, wood or ceramic.

Class 22

Class 22 covers textile materials in an unprocessed state, specifically raw fibres.

This class also includes some finished goods that cannot be easily classified in the other "textile classes" (23, 24 and 25), such as tents, awnings and sails. Sails are in Class 22 even though they are used with transport and sports apparatus, such as boats and ski sailing equipment, that belong in other classes.

Class 22 includes goods such as non-metallic slings for handling loads, bands for wrapping or binding, and ropes and string of natural or artificial fibres, paper or plastics. However, thread and yarn used for sewing, knitting, weaving, embroidering, or in the production of fabrics, are in Class 23.

Net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22, for example, fishing nets and animal feeding ne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certain nets for specialized purposes can belong in other classes, such as safety nets in Class 9 and nets for sports in Class 28. The Alphabetical List should therefore be consulted when classifying nets.

Other finished products in Class 22 are sacks for transporting or storing goods and materials in bulk, mail bags and bags of textile for packaging.

Finally, Class 22 includes padding, cushioning and stuffing materials, other than those made

of paper or cardboard (which would be in Class 16) or those of rubber or plastics (which would be in Class 17). Padding and stuffing derived from natural sources (other than rubber), such as straw, horsehair, kapok, feathers and seaweed, are thus in Class 22.

Class 23

As indicated in the brief Class Heading, yarns and threads, whether natural or synthetic, are in Class 23 so long as they are for textile use. Clearly, cotton, silk or woollen threads and yarns are in this class. Moreover, when used for textile purposes, fibreglass, elastic, rubber and plastic threads or yarns are also in Class 23.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lphabetical List sets forth a number of threads that are classified in classes other than Class 23 due to their specialized uses. Some examples of these are threads of plastic for soldering in Class 17 and identification threads for electric wires in Class 9.

Class 24

Fabrics intended for traditional textile uses are in this class, as are certain finished goods made of textile or of substitutes for textiles, such as plastic and oilcloth. Some examples of these goods are handkerchiefs, mosquito nets, printers' blankets, shrouds and wall hangings.

This class does not include finished items that are considered clothing in Class 25 or textile items that could be classified in other class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 or purpose. Some examples of textile goods that are not in Class 24 are horse blankets in Class 18, insulating fabrics and asbestos fabrics in Class 17, cloth for bookbinding in Class 16, and geotextiles in Class 19.

It should be noted that all bed linen, whether of textile or of paper, is in Class 24. However, table linen such as tablecloths and napkins are in Class 24 if they are made of textile or of substitutes for textiles, but in Class 16 if they are made of paper. Similarly flags and banners are in Class 24 when made of textile or plastic but in Class 16 when made of paper.

Sleeping bags and sleeping bag liners are in Class 24 as these goods are considered to be analogous to bed linen. The same is true of sleeping bags for babies which, even though they are a specialized good, are used to keep babies covered as they sleep.

Finally, bed covers such as blankets are in Class 24, unless they are electrically heated, in

which case they belong in Class 11 or in Class 10, if they are for medical purposes.

Class 25

Clothing, footwear and headgear (including for sports) are in Class 25. The exception is when clothing, footwear and headgear are specially adapted for a particular use in which case they are classified in the class that is related to that use. Some examples of specialized clothing articles that are not in Class 25 are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fire and other highly protective clothing in Class 9, clothing especially for operating rooms in Class 10 and skating boots with skates attached in Class 28.

Certain parts of clothing, such as ready-made linings, are in Class 25. However, most fastenings and haberdashery accessories are in Class 26, and structural parts of shoes like dowels and shoe peg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 in Class 6 or Class 20.

Class 26

Clothing embellishments are in Class 26. These embellishments may be decorative, such as lace trimmings, and frills and spangles for clothing. They may also be functional, such as belt clasps, snap fasteners, zip fasteners and shoe buckles. The broad reference to pins and needles in the Class Heading allows for the introduction of crochet hooks, knitting needles and sewing needles, as well as items that are related to these goods, such as pin cushions and boxes for needles.

It should be noted that natural and synthetic hair, wigs and other false hair items are in Class 26 along with items that are related to them, such as hair nets, hair bands and hair curling papers. Furthermore, whilst false beards are in Class 26, false eyelashes are in Class 3 with other cosmetic products.

The reference to artificial flowers in the Class Heading justifies the inclusion of many artificial replicas of natural flora. However, artificial Christmas trees are considered, for classification purposes, as objects of amusement, and are thus classified in Class 28 together with most Christmas tree decorations.

Class 27

Basically, this is the class for floor coverings and wallpaper. Perhaps the most important wording in the Class Heading is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 This is the language that differentiates items in Class 27 from certain building material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floors that are in Class 19, like tiles. There are very few exceptions to this broad category. As expressed in the Explanatory Note, the coverings in Class 27 are intended to be added as furnishings to previously constructed floors and walls.

The Class Heading specifically mentions non-textile wall hangings. This permits the inclusion of wallpaper in the class, even though wallpaper is not normally considered a "wall hanging". The term also makes it clear that wall hangings are in this class only when they are not made of textile materials. Textile wall hangings and tapestries should be classified in Class 24.

Class 28

Games, toys, playthings and objects of amusement, such as snow globes and confetti, are in this class.

Decorations for Christmas trees, Christmas trees of synthetic material and Christmas tree stands are in Class 28 as well. However, candles, electric lights and confectionery decorations for Christmas trees are in the appropriate classes for candles, lights and confectionery, namely, Classes 4, 11 and 30, respectively. Natural Christmas trees are in Class 31.

All amusement and game apparatus, whether with integrated display screens or adapted for use with external display screens or monitors, are in Class 28, along with the controllers for such apparatus. However, although all video game apparatus is in Class 28, it should be noted that game software is in Class 9.

While most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are in Class 28, there are some significant exceptions, such as protective helmets and goggles for sports in Class 9, gymnastic mats in Class 27 and boots for sports in Class 25. Similarly hunting and fishing tackle for recreational purposes is generally in Class 28 but some related goods such as hunting firearms and harpoons for fishing are in other classes (Class 13 and Class 8, respectively).

Class 29

Classes 29 and 30 are the "foodstuff classes". The foodstuffs in Class 29 are of animal or

vegetable origin and are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or for conservation.

Fresh vegetables and fruits are in Class 31 even if they have been removed from the ground or picked from the plant. Once the vegetables or the fruits have been processed for consumption or conservation, for example, cut for a ready-made salad, frozen, or cooked into a purée, a compote or a jam, they become a Class 29 product.

Class 29 is also the class for dairy products like milk and cheese. This also means that milk substitutes are in Class 29, such as almond milk and soya milk. Although most non-alcoholic beverages are in Class 32, beverages predominantly made of Class 29 ingredients like milk are classified in Class 29. Beverages based on milk substitutes, for example, peanut milk-based beverages, are also in this class.

Likewise, there are other foods and beverages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edominant ingredient, for example, foods like pizza and sandwiches are classified in Class 30 even though they may be made with Class 29 goods such as cheese, meat, fish, eggs or vegetables. This is because the predominant ingredient is considered to be the pizza dough or the bread, both of which are Class 30 products.

Following the same principle, filled pastries and pasta are classified in Class 30, even if the filling is composed of Class 29 ingredients. However, prepared meals can be classified in either Class 29 or 30 according to the predominant ingredient and must be worded with adequate specificit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lass.

Oils and fats which are used for culinary purposes are also included in Class 29 as products of animal or vegetable origin. These types of goods are, however, classified in other classes when they are not used for food, for example, oils for cleaning purposes in Class 3 and industrial oils in Class 4.

Class 30

Class 30 comprises products of plant origin that are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or for conservation. However, Class 30 does not include processed vegetables, which are in Class 29. Processed grains, rice, coffee, tea and cocoa are in Class 30 as plant products.

Substances that sweeten or improve the flavour of food and beverages, like sugar, honey, aromatic substances, preserved herbs, salt and condiments are also in Class 30, with the exception of essential oils which are in Class 3. Goods that may be in other classes when used for different purposes are also included in Class 30 when they are used as seasonings, such as processed seeds. Seeds that have been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but are not intended to be used to flavour or season food are, however, in Class 29.

Certain foods and beverag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edominant ingredient. For example, although most non-alcoholic beverages are in Class 32, beverages predominantly made of Class 30 ingredients are classified in Class 30. This is the case for coffee-, tea-, cocoa- or chocolate-based beverages.

Cereal grain products like flour are also in this class, as well as products made with flour, such as bread and pastries. It should be noted that foods like pizza and sandwiches are classified in Class 30 even though they may be made with Class 29 goods such as cheese, meat, fish, eggs or vegetables, because the predominant ingredient is considered to be the pizza dough or the bread, both of which are Class 30 products. This means that hot dog sandwiches and prepared cheeseburgers (served on a bread bun) are in Class 30 as well because the bread is considered predominant.

Following the same principle, filled pastries and pasta are classified in Class 30, even if the filling is composed of Class 29 ingredients. However, prepared meals can be classified in either Class 29 or 30 according to the predominant ingredient and must be worded with adequate specificit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las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 Heading, this class further includes sauces that are condiments, like soya sauce and ketchup. However, as Class 30 also includes certain sauces that are not necessarily condiments, like fruit coulis and tomato sauce, while cranberry sauce, jellies, jam and compotes are in Class 29, the Alphabetical List should be consulted when classifying these types of products.

Class 31

Class 31 includes land products that are not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live animals and plants, as well as foodstuffs for animals.

It should be noted tha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are in Class 31 even if they have been removed from the ground or picked from the plant. Once the vegetables or the fruits have been processed for consumption or conservation, for example, cut for a ready-made salad, frozen, or cooked into a purée, a compote or a jam, they become a Class 29 product.

Unprocessed grains, seeds and cereals belong in Class 31. Malt is in Class 31 because it is a grain that has germinated and then been dried to halt the germination process. At this point, malt is used as a basic grain ingredient that has not yet been processed into a Class 30 foodstuff or a Class 32 or Class 33 beverage.

Fresh eggs, i.e. eggs in their shells, could be considered an unprocessed animal product in Class 31. However, since eggs are not live, they belong in Class 29 together with other foodstuffs of animal origin. In fact, the only eggs that are mentioned in the Alphabetical List

in Class 31 are fertilized eggs for hatching, fish spawn and silkworm eggs. This is logical since these eggs are intended to hatch into live young.

Seeds for planting, as well as bulbs and seedlings, are included in Class 31. Natural flowers, trees and forestry products, such as trunks and unsawn timber, are also in this class. Once the timber has been further processed into semi-worked wood, for example, beams, planks or panels for building, these are classified in Class 19.

Products for animal litter are in Class 31 because most animal litter is ba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products. For example, straw, which is often used for animal litter, is an agricultural product and is thus classified in Class 31.

Class 32

Generally, non-alcoholic beverages are in Class 32, except for milk-, coffee-, tea-, cocoa- and chocolate-based drinks which are in Classes 29 or 30 depending on the predominant ingredient.

The only alcoholic beverage in Class 32 is beer. Beers have been in this class since the first edition of the Nice Classification. Subsequent proposals aimed at transferring beers from Class 32 to Class 33 have always been rejected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f the Nice Union. At the time the Classification was established, beers were included in Class 32 because they were often commercialized by the same companies that produced and/or sold soft drinks. They were also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soft drinks. Generally, beer has lower alcohol content than most beverages in Class 33,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beer in Class 32 was not decided on the basis of its low alcohol content but rather taking into account channels of commerce. Therefore, with the exception of beers, all alcoholic beverages, even those with a low alcohol content, must be classified in Class 33.

Class 33

All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are in Class 33, even those with a low alcohol content.

Pre-mixed alcoholic beverages are also in Class 33. However, non-alcoholic mixers that are used together with alcoholic beverages, such as ginger ale and soda water, are in Class 32.

Class 34

Not only are tobacco and tobacco-based products in Class 34, but also articles used by smokers. Articles that could be classified in other classes are in Class 34 because of this special use. Examples of this are ashtrays and lighters for smokers, as well as matches. However, ashtrays for automobiles are in Class 12, along with cigar lighters for automobiles, as both are considered as being specially designed parts of vehicles. It should be noted that tobacco substitutes that are not for medical purposes are in Class 34 as well.

Electronic cigarette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34, along with liquid solutions and flavourings for use in electronic cigarettes. Batteries and chargers for electronic cigarettes are, however, in Class 9.

Class 35

Class 35 services are those provided by persons or organizations that directly assist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nother commercial or industrial enterprise. Simply because an enterprise conducts business does not classify the activity of that enterprise in Class 35. If that were the case,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their specific activities, would provide Class 35 services. Services that may further the activities of a business but do not relate directly to the operation or management of a commercial or industrial enterprise belong in other classes. Some examples are various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in Class 36,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Class 38, transport services in Class 39, training services in Class 41, and so forth.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transcription, composition, compilation or systemization of written communications and registrations" and to compilation of data belong in Class 35. If a service is administrative in nature, for example, appointment scheduling services, it is normally classified in Class 35 even if it is ancillary to services in other classes.

Whilst the sale of goods is not considered in itself to be a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bringing together of goods enabling customers to view and purchase them are in Class 35. This can be in physical retail outlets, through mail order catalogues or by means of on-line retail stores.

Advertising is one of the key services in Class 35 and services which are conducted for advertising purposes usually belong in Class 35 even if they can be classified in another class when not for advertising purposes. For example, scriptwriting services are generally classified in Class 41 but such services belong in Class 35 when for advertising purposes.

Class 36

This class includes activities relating to fina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insurance. If a service affects the movement of money, investments in the form of money, insurance, or real estate, it is classified in Class 36. Most brokerage services are in Class 36 because a broker acts as an intermediary between two contracting parties in commercial or financial transactions. The only exceptions are freight brokerage and transport brokerage services in Class 39 because they involve the arrangement of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belong in Class 39.

Class 36 also includes appraisal, valuation or evaluatio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value of a particular item. The appraisal may be used as a reference for insurance coverage or for the sale or purchase of such goods. Similarly, the evaluation of repair costs is in Class 36 as a financial appraisal service.

There are appraisal, valuation or evaluation services in classes other than Class 36. For example, business appraisal services are in Class 35 since they provide "help in the management of the business affairs or commercial functions of an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 The appraisal may be used to evaluate and eventually improve business efficiency or customer service. Although such an improvement may have financial consequences for the business, the immediate purpose of the appraisal is not financial.

Furthermore, appraisal, valuation or evaluation services that assess the quality of an item or activity are in Class 42 since they are often provided by experts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s.

Class 37

Services in this class include the physical construction of buildings, ships and other major structures and the repair or installation of virtually all types of goods. They further involve extrac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mining, as well as gas and oil extraction.

Class 37 also includes maintenance and cleaning services. The distinction between Classes 37 and 40 (treatment of materials) for these services should be noted. Clean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in Class 37 return an object to its original condition, improve it or preserve it without changing its essential properties, while the services in Class 40 involve the transformation of an object or material into something different by altering its physical or chemical properties (for example, compare vehicle polishing in Class 37 with chromium plating in Class 40).

Class 38

Services in Class 38 involve providing the means by which one party can communicate with another. This includes using computers tha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r a computer or other system that provides communication to a human being, for example, through the medium of television or radio. Services in Class 38 provide the means to communicate, but not the content or subject matter that may be contained in the communication activity. However, simply because a service is conducted using telecommunication connections, it does not mean that the service is classified in Class 38. For example, banking services are in Class 36 even if the banking activity is done on-line using a computer terminal.

Class 39

Transport of anything or any person by any manner or means is classified in Class 39. From air transport to distribution of electricity, any service that has movement as its primary function is classified in this class. This is the case even if the purpose of the transport is not simply travel. Thus, ambulance transport, guarded transport of valuables and transport for rescue operations are in Class 39, rather than in the class associated with the purpose of the transport.

This class also includes packaging of good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 or storage, as well as storage of goods regardless of whether those goods are in transit or will remain in the same location for future retrieval. The rental of spaces and equipment for storage is thus also in Class 39 from rental of warehouses to refrigerator rental.

Arrangement of travel is another field of activity in Class 39. Thus, while most brokerage services are in Class 36, freight and transport brokerage services are in Class 39. Also the services of a travel agency involving the arrangement of travel are in Class 39 while other services provided by a travel agency are in other classes, such as issuance of travellers' cheques in Class 36 and making arrangements for lodging or meals while travelling in Class 43.

Class 40

"Treatment of materials" refers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essential properties of an object, a substance or a material through mechanical or chemical processes that render that object, substance or material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different than they were before the treatment or transformation. For example, the tanning of leather makes the final product so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aterial, namely, raw leather, that it may be considered an entirely

new product. It is worth mentioning that Class 40 also covers the treatment of intangible materials and so services such as air purification are also in this class.

"Custom assembling of materials for others" is a key service in Class 40. The transformation of leather, thread, rubber, metal and, perhaps, plastic into a shoe is a treatment of those materials to the extent that the final product is different from any one of its components. However, for such transformation to be considered a service, it must be performed for the account of others (see the Explanatory Note of Class 40).

It should be noted that activities such as cleaning, maintenance or repair of an object are not considered as "treatment of materials" since they do not alter the physical or chemical properties of the object but, rather, they return the object to its original condition or preserve it without changing its essential nature. Clean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are thus in a different class, namely, Class 37.

Class 41

Educational services belong in Class 41. They include the more formal or traditional forms of education, such as classes, seminars, workshops or degree programmes, as well as other forms of education or training, such as gymnastic instruction, practical training and the training of animals. Services that are integral to education but do not include teaching activities are also classified in Class 41. Such services include, for example, the publication of books or texts (other than the publication of publicity texts which would be in Class 35) and lending library services.

It should be noted that whilst all information could be considered to educate the recipient to some extent, information services are not considered educational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information and thus can be classified in any of the eleven service classes (see General Remark (c) for Services). Of course, if an information service refers to educational matters, it belongs in Class 41.

Class 41 further includes the organization of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and rental of the facilities used for those activities. It also includes services that aim to entertain or amuse, such as arranging beauty contests and gaming, as well as entertainment-related services like the rental of videotapes and party planning. However, services that are indirectly related to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may not be in Class 41. For example, business management of performing artists is in Class 35. Furthermore, some cultural or entertainment services in Class 41, such as the organization of exhibitions and fashion shows, can be classified in Class 35 when they are for commercial, promotional or advertising purposes.

Class 42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in this class include not only practical but also theoretical asp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Class 42 includes research and design services in mos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reas. Thus, although medical treatment services belong in Class 44, medical research services are in Class 42. Industrial analysis services, such as analysis for oil-field exploitation, water analysis and chemical analysis, are in Class 42 as well.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medical or veterinary analysis relat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is in Class 44,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research and analysis of data related to business, marketing and advertising are in Class 35, financial analysis is in Class 36, and garden design is in Class 44.

There are also a nu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n Class 42, although on-lin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elong in Class 38.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is in Class 42 along with other design services and so are services such as computer programming, data encryption and monitoring of computer system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simply because a service is rendered using a computer that such a service would belong in Class 42, so, for example,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would be correctly classified in Class 38. Similarly,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are in Class 37 along with othe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Class 42 also include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echnology, for example,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cy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nsultancy, even when the services provided by such technology may belong in another class.

Class 43

Class 43 includes restaurant services. Similar services, such as catering services and those provided by cafeterias and snack-bars or fast-food outlets, are also in Class 43. In general, these services involve preparing food and/or beverages for immediate consumption by the consumer.

Class 43 is also the class for temporary accommodation services, like those provided by hotels, boarding houses and day-nurseries [crèches]. The qualification "temporary" is important as it marks the difference with services which belong in Class 36, such as the rental of apartments or other real estate.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what is considered "temporary" as certain services in Class 43 provide accommodati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for example, retirement home services. However, this is not a real estate activity in the nature of renting an apartment which is intended to be someone's residen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Class 36).

It should be noted that not all activities related to hotel services belong in Class 43. For example, providing entertainment services for a hotel is a Class 41 service, and the services of a company that cleans hotel rooms would be in Class 37.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also includes the rental of meeting rooms and the rental of rooms for social events such as wedding receptions and birthday parties. These services thus belong in Class 43.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General Remark (b) for Services, the rental of furniture and tableware often used for such events is classified in Class 43 as well.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ravel agency services cannot be classified in one class. Indeed, such agencies provide services that belong in different classes, such as booking travel tickets and travel tours (Class 39), booking hotel rooms (Class 43) and booking tickets for cultural or entertainment events (Class 41).

Class 44

Class 44 includes services that provide care for both human beings and animals. That care may be medical or cosmetic in nature. Examples include manicuring, pet grooming, physical therapy and palliative care.

As animal care is classified in this class, it is a logical progression to include services related to agriculture, aqua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uch as weed killing and landscape gardening.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is class covers medical and veterinary services, it is for activities that provide actual medical or hygienic care. For example, whilst medical analysis services which relate directly to the treatment of persons are in Class 44, any theoretical research or analysis services are classified in Class 42 with the othe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Class 45

The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that are included in Class 45 are quite specific. Some examples are marriage agency services, horoscope casting, conducting religious ceremonies and burial services.

Legal services are often rendered by attorneys but this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a legal service in Class 45. While activities such as adoption agency services,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 and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protect the legal rights of individuals or corporations, these services are not necessarily rendered by attorneys. However, they are classified in Class 45 because of the legal aspect of the activity.

Security services are an extension of the two prior areas of activity in Class 45. Such services may be provided to individuals or corporations, and for legal or physical protection. Generally, services relating to guarding or safety of tangible property and individuals are in Class 45.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nternet security and data security are considered to be technological services in Class 42.

The Class Heading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is not intended to serve as a catch-all phrase that justifies the classification of services in Class 45 so long as they are related to needs of individuals. Many services that are provided to individuals are in other classes and should not be placed in Class 45 simply because they are "personal" or because the activity is performed to benefit an individual. For example, banking services may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nevertheless they are financial in nature and are thus always classified in Class 36.